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협을 비롯한 의문사의 정치적 해결을 원하는 세력들로서는 다시 한번 난감한 문제에 부딪친 상태다. 결국 의문사 문제는 강제 조사 내지는 수사권을 갖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 그 진로와 수준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본질적으로 현 정부에서의 의문사 진상규명이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것은 현 정부가 과거청산의 대상이 되는 세력도 대거 포함하는 보수가 대연정이라는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의문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된다. 따라서,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고 진상규명조차도 어렵다는 비판론도 대두된다.(9월 1일 범국민추모위원회 주최의 학술토론회 자료집 중 이창수 씨 발제문 참조)

의문사의 해결방향은 광주문제 해결 원칙과 일치되며,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불처벌 문제 해결 원칙과도 일치된다. 즉, 진실의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그것이다. 이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되어서는 올바른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의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이 보다 다각화될 필요성이다. 현재의 세력 정도로는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치투쟁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현 정부가 인권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를 아킬레스건으로 잡아 압박해야 한다. 의문사가 과거청산과 인권문제에서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여당에 각인될 때만 어느 해결방안이든 보다 뚜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정부여당이 자꾸 처음의 개혁적인 성격에서 후퇴하고 보수반동화되는 것을 막는 데도 기여한다는 점 또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가족과 추모단체들만이 아니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조직해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자료를 보다 충실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그래서 누가 보든 이 문제는 의문사이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납득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적인 사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내려는 전략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기구와 국제인권

단체들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유엔인권위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한다. 결코 국제적인 압력과 지지 없이 국내적인 노력과 투쟁만으로 의문사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권은 국제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김대통령은 국제적인 인권지도자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무튼 의문사는 오랜만에 정치적인 쟁점화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의문사 문제는 일보 전진이라도 이뤄내지 않으면 앞으로 의문사는 문제는 다시 제기하는 것마저도 어려워질 지 모른다. “의문사는 소홀히 다루어도 될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재의 당면과제”로 부각시켜내는 일이 의문사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다.

첨부자료 6 -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모색' 토론회 중

● 제 2주제 -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과 그 구제방법

(의문와 시효문제를 중심으로)
(한인섭, 교수, 서울대학교 법대)

● 제 3주제 -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상훈, 변호사)

- 연재 : 1999년 4월 12일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과 그 구제방법

의문사와 시효 문제를 중심으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1. 서 론

- 나치의 대학살로부터 보스니아의 코소보 대학살에 이르기까지 20세기는 국가폭력의 역사로 얼룩졌다. 대량 살육, 인종청소, 실종자, 고문, 불법감금, 재산권박탈, 강제이주, 강제아사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폭력은 인간에 대한 외경심을 짓밟는 폭거이다. 이러한 대량적 인권유린이 정당성 없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될 때 그 범죄 성의 질과 양은 개인적 범죄행위를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심각함이 인정될 수 있다.

- 일제의 미수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맞은 이후 한국 사회 역시 평온한 상태를 구가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및 냉전의 과정은 대규모의 살육을 기록했으며, 냉전·분단구조와 관련된 인권침해가 지속적인 쟁점이 되었다. 제주의 4·3은 국제법적 의미에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정확히 개념지을 수 있으며, 거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양민학살 사건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살은 정치군부에 의한 내란목적살인으로 법적 규정을 얻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하지만 그 공화국의 실체를 그런대로 확보한 것은 87년 이후일 것이다. 그 전 40여년간 독재의 시대가 지속되었다. 특히 5·16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된 권위주의 군사정권은 법률적 · 비법률적 수단을 함께 구사하면서, 반대자에 대하여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저지른 국가범죄로서의 특색을 지닌다. 특히 군사정권이 모든 반대세력을 압살했던 시대, 즉 1972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동안 국가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권리구제의 노력을 완전히 불가능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그나마 존재하는 법은 불법이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는 권력의 확보와 연장을 위하여 각종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이 횡행하였던 것이다.

- 이 시기의 국가범죄의 대표적 형태는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이다. 범국민적 노력을 통해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재규정되었고, 5·18의 가해자들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범으로 재규정되었다. 정치군부에 의해 자행된 가장 중요한 인권침해가 단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실로 지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하고 비상한 인권침해는 일상적 인권침해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시기는 실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상화>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인권침해의 형태는 <의문사>와 <고문>에서 가장 극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 87년 6월항쟁 이후 제도적인 의미에서 민주화가 진

행되고 있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민주화가 아닌 <인권>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담보상태인 것 같은 느낌을 자울 수 없다. 민주화가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면, 인권은 개인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각종 지배와 폭력에 대항하여 수호하려는 것이다. 인권침해가 쟁점화 되어도 국가 차원의 효과적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한정된 사법적 구제수단을 이용해보라는 주문만 받을 뿐이다. 1999년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의문사와 고문과 같은 과거의 국가폭력을 밝혀내고 시정할 국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관련 특별법안이 여야 각각 내놓고 있는 상태다. 금세기의 불행을 다음 세기로 넘기지 말고,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정의는 살아있고, 사필귀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말이다.

2. 국가폭력과 의문사

- 국가폭력은 법률적 형태와 <제도화된 관행>의 형태로 나타난다. 법률적 형태로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법률>의 이름으로 제정하여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전체가 위헌을 선고받은 반국가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법의 주요 부분이 위헌을 선고받거나 그 정당성이 결정적으로 의심된 법률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삼청교육대를 통한 대량적 인권침해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입법화한 계엄포고령 및 사회보호법, 광범하고 불확정적인 처벌을 가능케 한 반민주적 법률들이 있다.

- 민주국가의 외양을 표방하는 나라에서 법률 자체가 악법으로 구성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법의 집행과정에서 법을 어기도록 명령받거나, 법을 어겨도 조사처벌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어긴 자들을 방조하는 경우, 법을 어겼는지 의혹이 제기되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는 위법을 사실상 정당화한다. 국가체제 자체가 그러한 위법에 기대어 자기보존을 꾀하는 국가에는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횡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국가범죄(state crime)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 최종길 교수의 사망을 예로 들어보자. 중앙정보부는 1)법적 근거없이, 영장없이 최교수를 정보부에 연행하였다. 2)최교수에 대해 며칠동안 무자비한 고문을 감행하였고, 간첩조작 혐의를 덮어씌웠다. 3)최교수의 사인에 대해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했지만, 그 사망현장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였다. 4)최교수의 사인이 증정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관련자들은 형사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문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어 문제된 적이 없다. 5)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는 15년 동안 증거수집과 수사를 실질적으로 한 적이 없다. 즉 정보부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연행, 고문, 조작, 사인은폐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조사제재를 않음으로써 그 스스로 그 범행을 알면서 방조하였던 것이다. 고문한 자들이 최교수 개인에 대한 원한을 가졌을 리 없으므로 이 범행은 개인적 범행이 아니다. 누가 그 수사관의 입장에 섰더라도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고문은 자행되었을 것이다. 즉 수사관은 스스로 고문자인 동시에, 보다 상위에 있는 조직(기관)의 요구를 수행하는 도구였다. 따라서 그 고문 및 사망에 대해서는 고문자 개인의 범죄일 뿐 아니라, 그 조직(기관)의 범죄의 특색을 분명히 띠는 것이다.

- 김근태의 고문, 박종철의 고문사를 예로 들어보자. 이들을 불법연행했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는 육조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 육조는 말할 것도 없이 물고문 용이었다. 폐적한 샤워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물먹이기 위한 시설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청소하고 치우고, 물값을 지출하고 하는 행위에는 모두 국가기관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시국사범들을 일반 경찰서에서 처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어떤 사범을 안기부, 보안사 혹은 치본 대공분실로 보낼 때는 '고문'이 기정사실화 되었을 것이다. 이 육조의 존재를 공안기관, 경찰기관의 책임자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문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도 알고 있었다. 안기부, 보안사, 치본 분실에서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을 수많은 경험자들의 증언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때문에 고문(치사)에 대해 실행자의 책임은 물론, 그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자의 책임, 그리고 기관/국가 자체의 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 개인적 고문이 아니라 <제도화된 고문>의 경우에

는 그 기관/국가에 궁극적 책임이 지워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¹⁾

- 의문사로 제기된 사건들에는 공안기관의 개입 혐의가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기관의 개입혐의가 구체화된 경우도 있고 강한 의혹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기된 의문사 사건에서 사인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망은 개인 차원의 실수가 아닌 조직 차원의 범죄의 형태를 띠게 된다. 어디든 개인적 차원의 직권남용과 사망은 있겠지만, 그것을 덮어버리는 행태를 통해 그 행위는 개인적 범죄가 아닌 조직 전체의 범죄로 격상되는 것이다. 의문사를 방치하는 국가는 그 자체가 그 의문사의 공범으로 되어 버리게 된다는 점에서,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의문사 문제를 명쾌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진상규명

국가폭력과 의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상규명이다. 진실이 없이는 다른 어떤 위로나 격려도 의미 없는 것이다. 용서하고 사면하자고 하지만, 무엇을 용서하고 누구를 사면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된다.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타협할 수는 있되, 진실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타협도 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국가폭력의 경우 그 스스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스스로 용서하고 사면할 수는 없다. 남미의 독재자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자기사면법(self-amnesty law)는 국제인권법상 정당화되지 못한다.

진실 확보에서 대단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이 사실

1 유현석 변호사의 다음 이야기는 그 점에서 시사적이다. "릴리라는 주한 미국대사가 있었는데 박종철 사건이 났을 때, 나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미국에서도 도둑놈이 뱀질뱀질 부인하면 경찰이 화가 나서 따귀를 한 대 때리는 수가 있다고 그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말하는 고문은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오 국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고문하는 목욕탕 만들고, 고문하는 도구 사고, 고문기술자 채용하는 제도적 고문을 말하는 것이오"(유현석,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 3", 민주사회를 위한변론, 제3호, 1994, 119쪽). 즉 국가가 제도적 고문을 자행한 그 상황이 문제되는 것이다.

이다. 우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이 있다. 그보다 더한 문제는 독재정권하에서 용인된 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증거의 은폐와 관련자들의 입맞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경우 누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 그 때의 정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관련자들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증언할 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증언자들이 양심적으로 자백하거나 증언할 것을 기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여러나라에서 시도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주목할 수 있다. 남아공에서 잘 보여졌던 이 진실/화해위원회는, 모든 진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자백한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그것은 개인적 처벌보다 사회정의의 확보가 중요하며,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과 불벌 사이의 중간적 해결책을 만들어낸 셈이다. 그를 통해 가해자 집단을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의 확보 및 피해사실의 인정 및 피해로부터 원상회복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내부제보자(많은 경우 사건관련자일 것이다)에게 진실을 대가로 불처벌을 약속하는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4. 책임자 처벌 및 공소시효 문제

국가폭력의 한 담당자로서 가담한 자들은 대부분 15년의 공소시효의 상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시효가 만료했다면, 그것을 다시 처벌하기 위한 법논리의 개발은 솔직히 말해 쉽지 않다.

그러나 가끔은 시효의 논리가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와 같은 국가권력 자체가 관여한 대규모의 인권유린행위는 사후의 입법에 의해 처벌받았으며, 1968년 공소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국제조약은 이런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부적용을 선언하였다.

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의 경우 그를 지지하는

독재정권 하에서 처벌은 가능하지 않았다. 국가 자신이 폭력의 <범죄자>로서, 국가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행위를 전해 수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 행위 이후 1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것은 범죄자가 자기 범죄에 대해 불벌을 선언한 셈이다. 그동안 의문사 사건에서 사건당사자로 의혹을 받은 기관에 대해 어떤 조사도 진행된 바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國家不作爲로써 국가기관(및 국가기관에서 활동 한 개인)의 공소시효의 만료를 자동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공소시효를 둔 취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의逸失, 처벌감정의 약화, 도주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받았을 것이라는 점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처벌은 능성이 없다고 믿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이 도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리도 없으며, 의문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처벌감정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증거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관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진실을 선언하고 피해자의 법감정을 위로하며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 공소시효의 규정취지를 능가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거기서는 “국가의 訴追權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하며, 현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 제3조는 현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5·18사건에 관한 법이지만, 같은 취지는 고문, 장기구금, 의문사 등의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원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실질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이 분명한 만큼, 그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 즉 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도 논의되어야 한다. 공소시효 문제의 경우 명확

성을 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효정지사유 및 시효정지기간을 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18특별법 제2조 제2항에서 해석의 지침으로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을 1983년 2월 24일까지로 특정하였듯이, 같은 취지의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했을 때 사후입법으로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5·18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다루어 진 바 있다. 즉 시효조항의 진정소급효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위헌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2/3를 얻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언되었다.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만큼, 시효정지 및 연장과 관련된 법조항을 제정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 정의감정과 입법자의 의지가 결합된다면 합헌적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제적 인권기준도 설부른 형사시효 주장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불처벌에 대한 주아네 보고서에서는, ① 인권을 침해한 국가의 형사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반인도적 범죄나 전쟁범죄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는 시효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기관 자체가 관여된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본 논제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척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법치적이고 반인권적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5.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의 배상

국가 혹은 국가조직이 범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해서, 국가 자체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재의 형법이론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국가의 범죄에 대해 국가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첫째, 그것이 국가조직이 관여한 범죄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사과 이전에 <공식적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범죄를 공식적 인정이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성이 있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정확한 공식조사와 그것을 토대로 한 공식보고서를 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가령 국가범죄를 직접 자행한 기관의 불법성을 통제하고, 그것을 헌법과 인권원칙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는 확실한 조치 등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공식보고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사실 및 피해범위 등이 정확히 적시되어야 한다. 정확한 기록화를 바탕으로 하여 그 범죄들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국가범죄의 <피해자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라 함은 흔히 알 권리,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 배상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 배상 및 원상회복에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은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및 피해자지원단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자료 및 증거조사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적법 쟁점은 민사상의 소멸시효의 문제이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제766조 제1항) 및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 항과 같다”(제76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인권침해행위의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하급심에서는 87년 6·29선언, 88년 2월 6공 출범, 88년 12월 5공 청문회 등으로 보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현정질서를 회복한 1981년 1월 이후에는 강박상태가 종료되었고 정상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²⁾ 대부분의 피해구제 노력은 원천봉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국가조직이 관여하거나 다수 범죄자가 가담한 불법행위에 대해 도저히 구제를 청구할 수 없었던 5·18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과 입법이

의 강압적 분위기를 완전히 간과한 형식적인 판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였던 삼청교육대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1988년 11월 26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담화 형식으로 정부가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대상으로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해줄 것을 천명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피해보상을 거부하였다. 그에 대한 피해자측의 제소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원고즉 폐소, 항소심에서는 원고즉 승소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대통령의 선언은 정치적인 방침일 뿐 사법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측이 시효이익의 원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즉 피해자의 폐소로 귀결되었다. 그에 대해 소수의견은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삼청교육 관련 피해는 국가소속의 공무원이…개별적으로 저지르게 된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고, 그 당시의 비상한 시기에 국가에 의하여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실시된 삼청교육 과정에서 국가소속 공무원들이 대량으로 저지르게 된 특수한 불법행위의 경우이므로, …국가로서는 삼청교육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그러한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구차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방식이라는 점에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론을 폈다.³⁾

과거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형식주의적 법해석을 고수하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무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더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민사적 소멸시효보다 더욱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형사시효에서도 5·18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과 입법이

3) 제1심은 서울민사지법 1992. 12. 23. 91가합87072 판결; 서울고법 1994. 4. 6. 93나6722 제3민사부 판결; 대법원 1996. 12. 19.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6. 맷 음 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인정되고,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었던 기간중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인정해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통해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국가로서는 자신이 저지른 대량적 인권침해에 대해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국가의 승계자임을 자인하게 되어, 국가 자체의 정당성이 의문시 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법해석은 국제인권의 지침파도 배치된다. 앞서 말한 불처벌에 대한 주아네 보고서는 민사시효와 관련하여, “중대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배상청구에도 시효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원칙을 밝힌다. 사실 민사적 배상에서 시효 적용을 배제하기는 형사상의 공소시효보다 훨씬 용이하다. 국가기관이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추의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주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민사상의 구제는 정부와 국회의 결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며, 그것을 통해 누구의 권리가 침해당 우려도 없는 것이다.

또한 살펴볼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특별재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가해자로써 처벌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최소한의 요구이다. 그 명예회복이 정치적으로 선언된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법적 효과를 반드시 띠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명예회복은 입법과 사법을 통해 추구되어져야 한다. 입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특정행위가 명예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시법과정이 필요하다.

불행한 과거일수록 잊자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불행이 인간의 고의적인 범죄로 말미암은 것일 때, 그것은 잊어질 수 없다. 그것은 확인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국가의 기억할 의무와 만나야 한다. 인권침해의 과거로부터 국민적 교훈을 얻어내지 못하는 국가는 장래의 인권침해를 막을 길이 없다. 군사정권 하에서의 의문사 문제의 해결은 피해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양심의 문제로 승화되어야 하며, 그 해결을 위한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존재근거를 진실로 국민의 인권보장에서 구하는 민주공화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이상호 (변호사, 민변)

1. 그동안의 경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라 한다)'로부터 관련 법률안 제정을 요청받은 후, 1998. 7.경 민변 소속 3인의 변호사(윤기원, 정태상, 이상훈)로 하여금 위 법률안 제정을着手도록 하였다. 법률안은 가칭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져 완성되었고, 2회 정도의 토론회를 거친 후 국민회의측 의원(유선호 의원외)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 청원되었으며 아울러 한나라당에서도 별도의 입법안을 청원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당초 계획과 달리 가칭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중에 있으며,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민회의안과 한나라당안이 서로 상이한 점이 많아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국민회의쪽이 낸 '민주화운동 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한나라당이 낸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법을 적용 시기와 대상 등에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법률적용시기에 대해선 국민회의쪽이 3선 개헌안이 발의된 98. 8. 7부터 문민정부가 막을 내린 98. 2. 24까지로 잡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유신이 선포된 72. 10. 17부터 87. 6. 29까지로 좁혀 잡고 있다. 보상대상자 범위도 국민회의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회복이나 신장에 협력한 사람 ·사랑, 상이자 또는

2. 법안 작업 당시 고려점과 참조 자료들

(1) 법안 작업 당시 고려점들

법안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누가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조사할 주체가 될 것인가와 조사한 후에도 사인 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었다. 첫째 문제인 의문사 진상규명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별도의 위원회 설치 안으로 나뉘어지고, 구체적으로 특별 검사를 선임할 경우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는가와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강제수사권, 즉 영장청구권의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당초 '범추위'가 염두에 두었던 의문사종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은 최종길(73년), 장준하(75년), 정병영(78년), 임기윤(80년), 문영수, 정성희(82년), 이윤성, 김두환, 한영협, 최은순, 한희철(83년)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등으로 보상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한나리당은 ·유족판결··해직 또는 학사 징계··고문 등을 당해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람으로 좀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보상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회의는 총리산하의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를 주장하고, 한나리당은 대통령 직속의 '민주화운동관련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훈처도 '보훈대상자의 지나친 확대로 국가 부담이 가중되며, 기존 유공자들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이 있었다(물론 본격적인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 더 많은 사안들이 접수, 조사될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된 것은 법률상 '의문사'의 정의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변호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큰 개념이었으나, 잠정적으로 '의문사'란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민주화 운동'이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국민의 기본권 제약으로 탄압받거나 이에 항거하여 현 법상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기본적 권리 를 회복시키거나 현저히 신장시킨 경우'로 정의하였다.

(2) 관련 국내 법률의 검토

법안 작업을 위하여 관련 국내 법률과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였고, 이하에서 관련 국내 법률을 먼저 간단히 검토해 본다.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90. 8. 6. 제정)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율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명예를 회복하거나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하여 제정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15인) / - 별도로 광주광역시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자 여부의 심사, 결정, 보상금 지급 등 결정 / - 기타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 현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별법(95. 12. 21. 제정)

- 형법상 내란, 외란, 군형법상 반란, 이적,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

▼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95. 12. 21. 제정)

- 79. 12. 12과 80. 5. 18. 전후의 현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을 규정. 즉 79. 12. 12부터 93.

2. 24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 가능 / - 국가의 기념사업 추진의무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4. 8. 2. 제정)

-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 - 순국선열, 전몰군경이외에 4·19혁명사상자와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각 국무회의 의결) 등도 포함 / - 보상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기타 양로보호 등 지원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96. 1. 5. 제정)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제정 / - 사망자와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구성(15인의 위원 중 5인의 유족대표) / -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 소속 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위원 9인 중 4인의 유족 대표) / - 이 법의 특징으로는 경제적 보상 대신 위령탑 건립 등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다만 정부는 유족의 학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90. 12. 31. 제정)

-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목적 / - 의사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구성 / -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예컨대,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의료보호법에 따른 의료보호, 상훈법에 따른 영전의 수여, 생활보호법에 따른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실시.

▼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97. 12. 24. 제정)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과 기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한 목적 / - 국가보훈처에 신청후 보훈처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엽제 환자로 간주 /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등의 보상. 기타 의료보호 등 규정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3. 8. 7. 제정)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의 설립을 목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단체에 교부금을 주고 수의사업을 허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94. 12. 31. 제정)

-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목적 / - 국가보훈처에 신청 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여부 결정 / -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 운영 / - 보상금지급 및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양육보호, 시설이용, 국립묘지에의 안장 등

▲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94. 1. 1. 발효)

- 6·25사변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퇴역한 군인들의 명예와 예우를 위하여 제정 / - 국가보훈처의 감독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위탁 운영 / - 참전군인등의 명예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 기타 상훈법

(3) 남아공의 사례

과거 청산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로는 남아공의 예가 많은 참조가 되었다. 남아공은 1994. 4. 흑인을 포함한 다인종 참여 총선을 계기로 흑인정부가 출범하였고,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라는 헌법기구를 설치하여 과거 청산 과제

를 수행하였다²⁾. 위원회는 1)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 2) 정치적 동기와 연관된 인권 침해, 묵인, 가해 행위에 대한 사면 허가 3) 희생자들의 인간적, 국민적 존엄성 회복을 위한 보상 조치의 권고를 수행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인권 침해 소위원회, 사면 소위원회, 희생자 배상 및 명예회복 소위원회가 그것이다. 남아공은 기본적으로 인종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과거 청산의 주된 과제였고, 이를 위하여 과거의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사면이라는 형태로 일괄 처리하고 대신 가해자들의 자기고백과 사실적 진술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국민적인 통합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 사면한 것이 과거 청산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3. 의문사³⁾ 진상 규명과 관련한 문제점⁴⁾

그동안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주체로 언급되었던 것은 국회 자체의 위원회, 검찰 자체의 재수사, 특별검

2) 이창수, "외국 사례에 나타난 과거청산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을 참조하여 요약하였다.

3) 그동안 의문사로 주장된 죽음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① 1988년 1월 이후 청와대, 미대사관, 백악관 등에 '노태우 부정집권'을 고발하는 투서를 한 고정희(연세대 전기공학과 86년 졸업)씨는 1988년 3월 경찰에 연행되어 서초경찰서 대공과에서 조사를 받다가 강남 성모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된 후 5월 13일 오후 5시 40분 경에 병원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다. 고씨는 사고 전날에도 결혼, 수영 배우기 등 퇴원 후의 생활 설계를 하였으며, 경찰은 사고 현장의 피를 지워버리고 현장 사진을 찍지도 않았다.

② 서울대 1학년생인 김성수씨는 오전 시험을 앞두고 집에 있던 중 아침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간 후, 연고가 없는 부산 앞 바다에서 3제40피리 1개와 작은 것 2개)의 시멘트 덩이를 각각 다른 종류의 끈으로 허리띠에 매어 있는 채로 수심 17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③ 군내 의문사 중에는 83. 4. 부대 유류고 뒤에서 3발의 총을 맞고 숨진 허원근 일병사건이 있다. 허일병은 이듬해 자살로 처리되었는데, 당시 부검의는 좌우 흉부와 이마에 난 세발의 M16 소총 총상에 대하여 "왼쪽 가슴에 쏘이었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다 오른쪽 가슴에 다시 쏘았고 그때도 안되자 머리에 쏘았다"며 자살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족들은 사고 다음날 허일병이 첫 휴가를 나올 때 정이었고 자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으며, 가슴총상으로 어깨뼈가 부숴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머리에 총을 쓸 수 있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 인권위원회에 대한 법률이 장기간의 공전 끝에 올 하반기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인권위원회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을 맡게 될 지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사제, (가칭)인권위원회이었다. 여기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의문사 진상 규명의 문제는 단순히 형사상 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범추위'가 제기하는 의문사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기무사, 군부대, 경찰청 보안과 등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그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고 의혹이 있는 죽음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여야만 국가기관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의문사 진상 규명 주체의 선정기준은 누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기무사, 군부대, 경찰청 보안과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

위 방안중 가장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국회 자체의 위원회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 바로 국가정보원 등인데, 지금까지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능력을 보면 국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조선대생 이철규씨에 대하여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아무런 결론없이 끝나고 말았다. 또한 국회내에는 의문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어진 의원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자체의 위원회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현실성 없는 방안은 검찰 자체의 재수사이다. 물론 시인이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사기관(검·경찰)이 진실을 밝혀야 하겠지만, 불행하게도 과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검·경찰)은 '자살'이라는 두 글자만 반복하였다. 즉 이미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상태이고, 이러한 불신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더구나 의문사 당시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 현재 정치권과 수사기관의 고위층에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검찰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가정보원 등에 철저한 수사를 하리라고 예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방안은 (가칭)인권위원회에서의 조사 또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이다. 이 부분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강제수사권, 즉 영장청구

권의 가능여부이다. 즉 의문사에 관련된 자료는 국가정보원 등에 철저히 은폐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사단이 의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니 관련 핵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고 하여 위 기관들이 알겠습니다하며 이를 쉽게 제출할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법원에 압수, 수색 등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협의가 인정될 때는 즉시 구속 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⁵⁾.

문제는 우리 헌법상 압수, 수색, 구속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이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강제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실종된 죽음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하였지만, 우리의 경우는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자체만으로는 영장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안을 보면 위원회의 조사에 불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칫 더 큰 형벌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과태료가 무서워서 순순히 조사에 응할 리 만무하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대상기관이 대충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는 척만 하면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 조항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

결국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⁶⁾. 수사기관이 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 또한 관련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원용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설사 정부가 인권위원회에서 의문사를 조사할 예정이라면, 인권위원회에 사실상 강제수사권⁷⁾을 부여하여야 할 것

5) 98. 9. 1. 학술대회에서 천정배의원(국민회의)은, 강제수사권이 없이는 의문사의 진상규명이 될 수 없으며 수사권이 없는 위원회안으로는 진상규명이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6) 당초 '범추위'의 주장은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하여는 1차적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특별검사제안은 기존의 국민회의의 안, 참여연대와 광주민중항쟁연합의 안이 있었기 때문에, '범추위'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제와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사실상 강제수사권을 보유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그 대신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7) 그동안 논의되었던 안으로는,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가 반

이다.

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등과 관련한 문제점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1차적으로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를 선정한 후, 2차적으로 이들을 기존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의 예우를 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4·19혁명 관련자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관련자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다만 의문사로 추정되는 것 중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거쳤음에도 명백한 사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사인이 명백히 자살로 판단되지 않으면 위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여부를 판단하여 유공자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첫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개념 정의로서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⁸⁾. 특히 장기수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문제되고, 기타 노동·학생·빈민 운동 등이 논란이 된다. 둘째로 과연 이러한 법률안을 제정할 만큼 사회적 성숙성이 충족되었는지를 선행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정권의 성격을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률이 해방이후 민주화운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반법의 위치인가, 아니면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과 같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에 기초한 특별법의 위치로 볼 것인가와도

드시(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안, 위원회에 검사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안 등이 있었다.

8) 98. 9. 1. 학술대회에서 이미경의원(한나라당)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설사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막무가내로 법안 작업화하자고 주장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하였다.

연관되는 문제이다. 기타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념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법률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⁹⁾,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의 특별재심보다 더욱 강력한 특별재심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¹⁰⁾.

5. 결론

당초 '범추위'에서 주장한 초안들은 많은 수정을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의문사 진상 규명 작업은 단순히 과거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진상 규명 작업을 통하여 그 동안 국민과 정부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민적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국민이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사실 그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증거 또한 희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문사들은 진상규명이 쉽지 않는데, 또다시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에서 재차 '자살'로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과 정부간의 불신의 벽은 영원히 해소되기 못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인과 물증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또다시 1년을 보낸다면 또 하나의 증거가 사라진다는 심정으로 조속한 법률제정이 요망된다.

첨부자료 7 - '(세청)인혁당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시민토론회 중

● 총론 발제문 1

1.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과
현대사적 의의 (김영수 외대강사, 정치학박사)
2.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과 법 (박홍규(영남대 법대 학장))

● 각론 발제문

1. 세청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문제에 대하여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연재 : 1999년 10월 15일
·장소 : 대구 매일신문사 11층 세미나실
·주최 : 대구경북지역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과 현대사적 의의

김영수 (외대 강사, 정치학박사)

이른 새벽의 시원한 생명수를 마시기도 전에
어두운 밤의 폭력에 쓰러져 싸늘하게 접혀진 영혼의 날개
살이남은 새벽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는 영혼의 날개
잔실한 역사의 보금자리에 편안하게 날개를 접는
해방과 환희의 창공으로 날아가는 우리들의 날개 짓

1. 문제제기

IMF 관리체제 하에서 세기말의 종착지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지만,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기만 하다. IMF 체제의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삶이 그렇고, 초국적 독점자본에 종속되는 한국의 경제가 그렇고, 또한 김대중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개혁의 실현이 그렇다. 정권·자본·노동자·민중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상호간의 동반자적 관계 및 갈등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김대중 정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개혁론”¹⁾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그것은 신자유

주의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수준이라 할지라도, 김대중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실질적 민주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것의 실현과정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대중들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 주체들간의 갈등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둘러싼 정권·자본·노동자·민중간의 갈등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적 관계는 국가권력의 합법적인 폭력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정권·자본·노동자·민중간의 갈등적 관계를 해결하려는 주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에 기반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도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노동자·민중들의 제반 이해를 추구하려 했던 주체들과 그러한 주체들의 투쟁은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역사의 길목에서 노

1) 김세근, 「민주주의 이론과 한국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

치』, 현장에서 미래를, 1997, 300-310쪽.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개혁론은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 확보,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민사회가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 국가가 사회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의 민주화 등을 민주 개혁의 핵심과제로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동자·민중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역사적 주체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바로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²⁾사건의 대상들이었다.

1945년 민족해방이 된 이후 저질러진 계획적이고 직접적인 학살사건으로는 1948년의 제주4·3항쟁 사건, 한국전쟁, 각 지역의 양민학살 사건, 1958년 조봉암 사건, 1975년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 1980년 광주민중항쟁 사건 등이다. 그리고 각종의 의문살인 사건과 같은 우연적이고 직접적인 학살사건 뿐만 아니라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주체적인 의식을 말살하는 각종의 간접적인 학살 사건을 예로 든다면, 지면이 너무나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주체들은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민주제단'에 피를 바쳐야 했다. 민주주의를 억압해야만 했던 국가는 물리적 폭력만을 권력의 기술이자 동의기제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도 그러했듯이, 김대중 정권 역시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학살된 역사적 주체들을 한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 복권시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역사 바로 세우기, 제2건국' 등의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계획적이고 간접적인 학살의 동의기제만을 시민사회내에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새천년을 앞두고서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지배권력의 의도 등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형장에서 혹은 투쟁의 현장에서 쓰러져 간 민주영령들을 부활시켜 내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역사적 주체들 중의 하나가 소위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이다.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과 주체들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면서 국가권력의 폭력성, 한국의 역사적 모순과 그것을 지양하기 위한 과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승해야만 과제 등을 규명해야 한다. 25년 전의 악몽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25년 전의 역사를 되살려 새천년의 길잡이로 삼아야 할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곧

2)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학살은 혐의의 개념으로는 집단적 혹은 개별적 살인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는 살인·구속·구금·폭력적 국가장치의 동원·심리적 폭력 등 국가권력의 총체적인 폭력을 의미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또한 작위성 여부 및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무연적이고 직접적인 학살, 둘째, 무연적이고 간접적인 학살, 셋째, 계획적이고 직접적인 학살, 넷째, 계획적이고 간접적인 학살. 소위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학살은 계획적이고 직접적인 학살로 볼 수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개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자,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촉매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사건 발생의 역사적 배경

1) 식민지 잔존세력들이 사회적 지배블록으로 재등장

일제 식민지체제의 기득권 계층인 지주들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적인 토지개혁정책과 적산불하정책, 그리고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및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국가권력의 물리력으로 유명무실화하면서 남한의 권력블록으로 재등장하였다. 이러한 권력블록은 4·19항쟁으로 교체되는 듯 하였으나, 미국의 암묵적 지원과 지지를 받은 5·16군부쿠데타는 기존 권력블록의 기득권을 온존·강화하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외국자본 차관정책이 그 디딤돌로 작용하였다. 박정희 군부정권은 기존 기득권 세력의 물리적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친일경찰과 친일군대를 중심으로 한 친일·친미·반민주·반공세력들의 순도 높은 결정체였다.

미군정은 식민지 경찰의 85%를 미군정의 경찰로 재등용, 지배권력 장악시 50% 이상이 식민지 경찰이었고, 식민지 시대의 관공리 역시 재등용되었다.³⁾ 이승만 정권 실질적인 토대 역시 식민지체제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지주계층과 관공리·경찰 등이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체제의 치안유지법을 골자로 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폭력적인 국가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고, 반공주의자로 변해버린 친일세력들을 엄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1946년 1월 15일에 경기도 태릉, 현재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 자리에 제1연대를 창설하는 것을 필두로 조선국방경비대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조직되기 시작한 조선국방경비대의 간부요원과 통역요원은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로 충원되었는데, 이 학교를

3) 김대상, 「친일세력 재등장의 정치구조」, 이수인 엮음, 『한국 현대정치사』, 실천문화사, 1989, 71쪽.

졸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주군 출신 원용덕과 일본군 출신 이응준⁴⁾이 추천하는 일본군·만주군 출신자들이었다.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임관된 110명 중 일본군 출신이 87명, 만주군 출신이 21명, 그리고 광복군 출신이 2명이었다.⁵⁾ 만주군이 일제 괴뢰국인 만주제국의 군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10명 중 108명이 친일군인⁶⁾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는 국립경비사관학교가 간부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였는데, 정부수립이전에는 역시 일본군·만주군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월남한 이북 출신의 우익 청년들이었다. 박정희 역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무관으로서 만주군에 배속되어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는 1942년 3월 일제의 만주 괴뢰국인 만주제국의 육군사관학교였던 신경군관학교 졸업식장에서 다음과 같은 답사를 하였다. "대동아 공영권의 수립을 위해 성전(聖戰)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다가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졸업하였고, 만주군 제8단에서 일제의 폐망을 맞이하였다.⁷⁾

이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은 물론 군인, 경찰, 관료 등 반민족적인 반민주적인 세력의 옹결체였다. 그래서 친일세력과 친미세력들은 4·19항쟁의 위기를 넘기고, 5·16군부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5·16군부쿠데타의 '포섭대상이자 수혜대상'으로 변화되었다. 5·16군부쿠데타는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지배블록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사회적 권력블록의 변화와는 무관했다. 멀게는 식민지 지배체제와 가깝게는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사회적 권력블록

4) 1922년에 사망한 이응준은 미군정청 군사고문으로 한국 군대의 창설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하여 친일군인들을 미군정청에 추천하였다. 그는 일본 육사 출신의 조선인 대좌였으며, 군국주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일본 군인이었다. 안진, 「미군정기 역임기구 연구」, 새길, 1996, 233~243쪽을 참조하시오.

5) 보다 구체적인 사실은 안진, 「미군정기 역임기구 연구」, 새길, 1996년을 참조하시오.

6) 개인적 수준에서의 친일행각을 염두에 두고서 쓰는 말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일제의 군인으로 참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족해방운동 세력과 일제간의 투쟁이 전개되었던 당시의 사회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의 형성을 위해 싸웠던 측면, 그리하여 결국 일제 식민지 체제의 강화에 기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다.

7)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그 치욕과 영광의 삶」, <http://www.banmin.or.kr/main.html>을 참조하시오.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들 세력들은 1960년대의 차관경제에 기반하는 경제개발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유신체제의 지지기반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신 쿠데타 직후의 혹심한 인권탄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71년도에 들어와 무역조건의 개선이 두드러지고, 한국은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에 있어서 세 번째 큰 상대국이라는 미국 행정부의 평가가 의미하듯이, 미국은 유신체제를 지지하였다."(서중석:1988) 이와 같이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일제 식민지 체제와 미군정 체제를 계승하면서, 친일·친미·반민주·반공 군부독재체제, 소위 '2친(親) 2반(反)' 군부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과거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는 군사병영체제 아래에서 반공과 경제 근대화의 그늘에 가려졌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기득권은 더욱 강고하게 구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유신체제의 구축과 민주압살

5·16군부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통제전략의 기조를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좌익운동 세력의 대중적 근거지를 폐쇄, 국가의존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양성,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초하는 경제성장'이었다. 이러한 통제전략의 기조는 반공이데올로기 통제정책, 한국노총의 양성화, 노동착취정책에 기반한 경제성장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민중들은 반공·근대화 이데올로기의 동원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기본적인 권리와 요구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체제위기의식의 조장, 체제우위성의 강화,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유포, 간첩조작사건을 통한 정권 위기상황의 극복, 그리고 남한 민주변혁운동에 대한 북한의 조종설 등을 유포하였다.

1969년 3선개헌과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하 민청학연)·소위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통제전략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응축하고 있다. 1969

8)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수, 「한국 노동자 정치운동과 민주노조운동간의 연대관계 : 1970년에서 1995년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2, 29~65쪽을 참조하시오.

년 3선개헌 반대를 시작으로 학생운동은 조직적인 저항을 시작하였고, 노동자·민중들의 저항이 격렬해졌다. 70년 11월 전태일의 분신투쟁을 계기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는 폭발하였다. 1969년과 1971년의 노동쟁의는 평균 145건에 불과했지만, 1971년에는 1,656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학생운동, 재야 민주화운동, 제도권 야당, 심지어 보수언론조차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운동에 대한 정치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은 1971년 정권교체운동과 맞물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의 정치성을 극대화하였다. 이후 노동쟁의는 생존권 투쟁과 반유신 민주회복 투쟁과 결합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반유신 민주회복 투쟁이 고양되는 1974년에는 1973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노동자·민중들의 요구는 간단하였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것이었다. 현상적으로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절대적인 물질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60년대의 개발독재정책으로 상대적인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의 공급원으로서의 도시빈민들이 급증하였다. 74년 4.3투쟁에서 발표된 학생운동 진영의 성명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모순성인 빈부의 차이 및 특권층과 매판자본가와의 결탁 등으로 노동자, 농민 등 무산대중이 격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민청학연운동자료집; 1994)

박정희 정권은 '북괴 남침설, 안보 최우선주의, 교련 교육의 강화, 70년 10월 15일 위수령의 발표' 등 군사병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12월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였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노동자들의 모든 쟁의 파업 행위가 금지되었고, 노조는 있으되 노동조합운동이 금지되는 것' 이었다. 또한 더욱이 박정희는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제도권 야당 및 국민대중들로부터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쿠데타를 일으켜야만 상황에 처해 있었다.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 투쟁, 학생운동의 지하유인물 투쟁, 재야 명망가와 제도권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투쟁 등으로 말미암아 궁지에 몰리게 된 박

정희 정권은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73년 4월 박형규 목사 등의 부활절 기도회를 계기로 반유신투쟁이 표면으로 드러났고, 1973년 2학기부터 학생운동은 동맹휴학, 수학거부, 시험거부 등의 반유신투쟁의 분위기를 고양시켰다. 이러한 분위기는 73년 12월 24일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이에 유신체제는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생운동은 긴급조치에 저항하는 선도적 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국 각 대학의 운동분자들을 최대한 결집, 조직하여 일시에 유신체제 타도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것으로 계획된 투쟁이 1974년 4월 3일의 전국 동시다발적 시위투쟁이었다. 학생운동은 이 투쟁을 전개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유신체제를 구축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① 민족자본의 압살과 매판자금을 빙자하여 수십 억불의 외채를 국민에게 전가시켜 혈세를 강요한다. ② 매판 특권체제와 부정부폐의 특권족벌들이 서민생활을 위기에 몰아 넣고 있다. ③ 3선개헌으로 노골화된 영구집권 1인 독재와 정보폭압정치다. ④ 자유를 박탈하여 노예상태를 강요하는 깡패집단들이다. ⑤ 호화 방탕을 일삼아 민중의 삶과 뼈를 삼켜 살찐 도둑 무리들이다. ⑥ 신식민주의자들에게 이 땅을 제물로 바친 매국노들이다.⁹⁾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정책은 노동자·민중들의 생활을 위기에 몰아 넣으면서 인간의 자유와 민주를 압살하는 대신에 자본을 독점하는 소수의 반민족적 특권세력을 양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투쟁은 초보적인 수준의 통일전선 형태를 추구하면서,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재야, 종교계, 지식인, 명망인사 등을 조직화하는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반유신 민주회복 투쟁이 전민중의 항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정부는 1인독재체제하에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하여 국민을 강압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니, 우리의 조직을 확대, 강화

하여 전국적인 학생조직과 연결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우리의 목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국가체제를 혁명하여야 한다."(민청학연운동자료집; 1994) 이 판결문의 내용대로 당시의 학생운동 세력과 소위 인혁당 재건단체의 주체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는가?

박정희 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의 소요라는 명분을 내세워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였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가담자로 자수를 하지 않으면,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시위가 있을 때, 대학폐쇄를 불사하며, 군 지역사령관은 지방장관으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한다". 민주화 세력에 대해 사형조치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긴급조치 4호의 내용과 박정희 정권의 의지가 정당하다면, 학생운동 세력은 공산주의자로서 사형을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74년 하반기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발족과 함께 민청학연 구속학생들 석방투쟁의 활성화, 이어서 11월 27일에 재야인사 71명이 모여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발족, 각 신문사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투쟁 등이 전개되었다.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사형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4호에 대해 저항하였다. 유신체제를 구축하려는 박정희 정권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는 민족민주진영간의 힘 겨루기가 진행되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75년 2월 12일에 유신헌법 신임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밟아 2월 15일과 17일에 인혁당 관련자 전원과 민청학연 관련자 4명을 제외하고 전원을 석방하였다. 만약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다면,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연 관련자들을 석방하지 않았을 것이다. 2친(親) 2반(反) 군사병영체제가 사상을 전향하지 않는 사상범들을 장기간 투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것은 오히려 75년 초반 유신헌법 반대투쟁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석방투쟁의 성과는 박정희 정권 스스로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1인독재체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74년 말 경의 간첩단 사건, 인혁당 관련자의 학살, 월남 패망 이후 제도권 야당의 반

민주적 국회 등원, 반공 이데올로기 동원 조작(반공궐기 대회, 안보궐기대회) 등으로 2친(親) 2반(反) 군사병영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였다. '겨울 공화국'이라 불리우는 긴급조치 9호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암흑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김지하 시인은 "유신체제는 민주주의를 압수하겠다는 것, 장기집권한다는 것, 총통제·군주제의 발상이었다."라는 것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짚약하고 있다.

3) 박정희 정권의 폭력적인 국가장치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은 폭력적 통치체제 아래 지배 세력이 피지배세력을 억압하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 다수가 소수를 차별화시키고 다수가 소수의 학살을 동의·방관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다수의 동의·방관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 이었고, 오히려 다수 역시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서 계획적이고 간접적인 학살을 당하는 것이었다. 폴란챠스(1978)가 "국가는 직접적으로 죽음을 관리하며, 폭력이 모든 형태의 정치권력을 지탱시킨다."고 강조하였듯이, 폭력적인 박정희 정권은 동의·방관하는 다수를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학살하고, 소수를 직접적으로 학살하였다. 2친(親) 2반(反) 군사병영체제는 지배계급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 세력 전체를 직·간접적으로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러한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억압적 국가장치 역시 폭력적인 지배체제의 통일성에 기여하였다. 국가의 지배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정치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배체제의 통일성은 억압적 지배장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억압적 지배장치의 능력, 즉 억압적 지배장치의 병렬적인 권력망을 확립하고 다른 정치에 속해 있는 요원들에게도 침투해 들어가고, 적절한 시기에 권력의 전통적 위계질서를 재조직하며, 해제모니 분파의 총체적 이익에 적합한 권력의 교체와 순환을 실행한다." 이와 같이 거미줄과 같은 정보망으로 형성되는 폭력적인 정보정치 및 국가권력의 하부기관의 기능을 잘 담당했던 것이 바로 중앙정보부였고, 그것은 또한 국기보안법이라는 또 다른 억압적 지배장치와 동반자적

9) 민청학연운동자료집,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문집, 민청학연운동 계승사업회, 1994.

관계를 유지하였다.

제1차 인혁당 사건에서 제출된 도예종 씨의 항소이유서는 국가기구의 폭력적 기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가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 나라 국가기관 이면서도 거기에는 이 나라의 헌법도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인간성의 명예를 옹호하는데 최소한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다만 무법과 불법고문과 치욕만이 존재하는 곳”(도예종; 1965)

이와 같이 인혁당 재건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은 폭력적인 국가기구와 동원이데올로기의 의한 학살이었다. 군부정권의 동원이데올로기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반공이데올로기의 중충적으로 결합되었고, 또한 학살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대중들은 “근대화의 결과에 대한 목숨, 대규모 반공 캠페인, 잇따른 좌익사건의 조작”(서중석; 1988) 등이 결합되면서, 국가권력의 폭력을 묵인·방치할 수밖에 수동적 주체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국가테러리즘과 동원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다수를 침묵하는 세력으로 만들고, 정치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의 형성을 폭력적 국가기구로 억압하였다. 강신옥 변호사는 “헌법개정청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기본적인 민주국가의 권리야. 법에 의해서 더군다나 대통령에 의해서 범죄를 만들어 버리고, 사형까지 하고, 이건 완전히 폭력이다.”라고 증언하면서,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인 계급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인 폭력은 물론 비합법적인 폭력도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폭력은 억압적 국가기구에 의해 구체적으로 자행되었다.

3. 비민주주의적인 사건조작의 과정

1) 정권보위 수사

2친(親) 2번(反) 군사병영체제는 73년 12월 7일에 학생들의 반유신 민주화 투쟁에 굴복하여 구속된 학생들

전원을 석방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반유신 투쟁을 위한 통일전선조직이 급속하게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각계각층의 세력들이 ‘민주회복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반유신 민주회복 투쟁의 전선을 결합하였다.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2친(親) 2번(反) 체제의 동맹·지지세력의 이탈을 방지하면서 저항진영의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근대화의 과정에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 국민대중들과 저항진영간의 결합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저항세력의 정치적 구심력을 이완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제도권 야당과의 정치적 지배연합 구조의 균열을 방지하고, 저항세력인 민족민주진영을 정치적으로 분자화하는 것이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동원·조작하여 무작위 국민대중들을 간접적으로 학살하고, 보수적인 제도권 야당을 국회로 등원시켜 상호 권력분점 관계를 재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연 사건과 소위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을 만들었다. 그들의 의도는 이 사건의 주체들에 선고에서 제시된 양형의 이유에 잘 드러난다.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내려진 양형의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간첩침략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보전, 자유의 수호 ② 유신안보체제는 6.25 와 같은 동족상전의 민족적 비극의 재현을 막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③ 학생들을 공산당의 앞잡이로 이용코자 배후에서 조종 ④ 과거 사상범 등 기타 반국가적 전파자 ⑤ 심지어 이 신성한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인 내지 자기 정당성의 주장 등으로 일관함으로써 자기가 저지른 죄과의 단죄를 교묘히 모면하려는 피고인들의 태도는 실로 간교함을 금할 바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다.¹⁰⁾

이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과거 반국가적 사상범의 근거를 4.19 당시의 혁신적 정치활동과 제1차 인혁당 사건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제1차 인혁당 사건의 관련자들은 결코 북한을 동조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

것은 먼저 민족통일방안에 대한 인식에서 증명된다.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통일방안을 ‘무력에 의한 남한 적화통일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괴뢰집단은 정부를 차지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하게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공산주의 제도와 이념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남한내 동조세력을 구축하여 남한의 공산화 혁명을 유발시키려는 활동으로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민청학연운동자료집; 1994)

그런데 도예종씨를 비롯한 제1차 인혁당 사건의 관련자들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론이 아닌 평화통일론을 지지하고 있었다. 도예종씨는 항소이유서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방안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UN감시하에 인구비례 남북 자유총선거를 지지,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선행되어야, 위정자나 국민 모두 통일방안을 좀 더 연구하여야, 자유민주주의의 보장, 빵과 자유도 보장되는 민족적 복지국가의 수립” 등의 민족통일의 전제조건과 방안이었다. 이러한 통일론은 민족분단을 영구화시키고 있는 남북한 정권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민주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의 반국가적인 사상적 근거를 제1차 인혁당 사건 찾는다는 것은 정권보위를 위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동원·조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김종길 변호사는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의 변론에서 관련자들을 공산주의 세력이 아닌 민주변혁을 지향하는 혁신세력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무조건 혁신적인 생각을 갖었다고 공산주의로 몰 수는 없다. 세계 각처에서도 엄연히 공산주의와 혁신은 구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혁신노선의 정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 아니다. 피고 우홍선과 6명의 변론은 나로서는 벅차다. 이 중에는 잘 아는 친구도 있으며, 선량하고 재능있는 사람들로서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면 변호사 직을 내놓아도 좋다.” 이철 역시 당시의 투쟁은 체제전복이 아니라 민주정권 수립 및 민주회복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당시의 운동을 정권보위의 차원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배후조종(背後操縱)으로 규정했던 사실을 반박하고 있다. “여정남씨는 1960년대 말 3선개헌 반대때부터 반정부 투쟁에 적극적이었던 학생

이었다. 그 때부터 우리는 서로 의기투합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는데, 노동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하다는 것 자체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가 하고자 한 것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 정당한 주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러한 잘못된 유신은 물리가야 한다는 원칙적 주장이었다.”

재건단체 조작사건은 저항세력의 형성과 저항세력을 정치적으로 분자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학생운동과 노동자·민중들의 분출은 ‘반유신 민주회복’이라는 주체적인 저항이데올로기를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체성의 이데올로기적 (재)형성은 사회적 과정이다. 둑인에서 봉기로의 급작스런 변이는 집합적인 과정들이지, 단순히 일련의 개인적 변화가 아닌 것이다.”¹¹⁾ 특정 사회의 담론적 질서의 형성은 모순과 위기의 주요한 순간에 사회세력들에 의해 행해진 투쟁의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군사병영체제는 정권을 보위한다는 일념으로 학살을 자행하였다.

문정현 신부는 “급박한 사형집행은 궁지에 몰려 국민의 여론을 뚫고 권력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내지는 극한적인 결단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조리게 하여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김지하 시인은 “유신체제에 대한 전국적인 반대는 박정희를 포위해서 국내외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유신 정권을 봉괴시키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다.”라는 증언으로 당시의 정권보위 전략의 폭력성을 반증해주고 있다.

2) 비밀공작 수사

정보폭압정치가 거미줄처럼 퍼진 권력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듯이, 이 사건은 국가권력의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는 비밀공작수사의 결정체였다. 사실의 왜곡뿐만 아니라 정권보위전략의 전략적 의도에 걸맞는 수준의 사건으로 조작하는 것이었다. 비밀공작수사는 민청학연 조직체계의 조작, 공판기록의 조작, 소위 인혁당 재건주체들의 활동 사실에 대한 조작으로 이루어졌다. 이

11) Goran Therborn,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권력’, 최종열 옮김, 백의, 1994, 113쪽.

러한 사건조작의 백미는 수사관들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다. 제1차 인혁당 사건에 관련된 도예종씨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관들의 조작수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혁신계의 명단 하나 하나 검토해 보니 당신이 제조건상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선정했으며, 계엄령 선포를 당시때문에 했는데, 중앙정보부에서 못잡을 이유가 있나. . . 쓸데없는 말썽 부리지 마고 암전하게 대법까지 마치면 특사라는 것이 있으니 염려마라. 그 때 전원 석방시켜 줄테니”(도예종;1965)

먼저 민청학연운동은 반유신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는 학생운동 내부의 비체계적인 투쟁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체계화되고 사상적으로 지도를 받는 거대한 반정부 조직으로 조작되었다.

민청학연의 활동총책이었던 이철은 74년 4월 24일 체포되었는데, 이미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직체계가 완성되어 있었고 수사과정에서 여정남과 인혁당의 배후조종 진술을 요구받았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7월 24일 민청학연 수사를 발표하고, 이어서 5월 27일에 민청학연의 배후조종 세력인 인혁당, 공산당, 좌파혁신계 등을 발표하는 민청학연 2차 발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민청학연 운동은 배후조종 세력의 지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선도적인 학생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한 투쟁조직체였다. 이것은 이철과 유인태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은 “민청학연은 자유민주주의 질서회복, 서민대중·민중을 위한 복지제도 구축” 등을 추구하는 유신철폐와 민주화복 운동이었다. 4인 지도부에 의한 배후조종이라는 말은 정보부에서 만든 말이다. 민청학연의 조직화 과정은 반유신 투쟁의지를 확인, 고취시키고 결집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조직적 역할분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청학연 사건은 누가 주도했다거나 일방적 리드를 하였다는 설명은 불가능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유인태는 교도소 마당에서 김용원에게 “죄송합니다. 저희들 학생운동 때문에 공연한 배후세력으로 몰려 고생을 해서. 힘내십시오”

둘째로는 법정 피고인들이 폭압적이고 위협적인 수사과정과는 다르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공판의 내용이 조작되었다. 법정의 권한·권위보다 중앙정보부의 권한·권위가 보장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세친 인혁당 가족 일동의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판과정에서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예 사실이 있습니다’로 변조되었다. 공판기록이 변조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종길 변호사와 조승각 변호사도 인정하고 있다.

셋째로는 활동 내용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술서를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조작은 이미 제1차 인혁당 사건에서도 동일했다. 도예종씨는 “진술서는 폭력적인 고문으로 정신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원고를 작성해 주든가, 인쇄하여 주든가, 불러 주든가 등의 방식으로 조작되었다.”(도예종;1965) 전창일 씨 역시 수사과정에서 조작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 받았다. “1964년에 학생들이 한일협정 반대를 했을 때, 그 배후에서 지도하고 조정했던 지하당인 인민혁명당과 유사한 지하당을 만들어서 유신반대 학생운동을 지도할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비밀공작수사는 국가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인혁당 재건단체,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생활인들을 반국가적인 지하정당과 학생운동, 그리고 노동자·민중운동을 결합시켜 내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유인태씨는 “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인혁당이란걸 들어 본적이 없다. 물론 그 전에도 들어 본적이 없다. 정보부에서 불여준 이름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애초부터 인혁당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이들은 과거 자신의 정치사상적 기반을 버리지 않은 채,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진보적 시민(?)에 불과했다. 문정현 신부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들이 말하는 국가를 전복하고 지하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조작이고, 짐작컨대 학생들의 배후세력을 만들다 보니까 인혁당을 만들었고, 그것은 조작한 것이라 확신 한다.”

3) 인권말살 수사

인권말살수사는 박정희 개인의 의지가 관철되는 과정이었다. 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시켜 반유신 운동세력에 대한 사형조치의 의지를 밝혔던 박정희는 4월 5일에 민청학연 대학생들을 총살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74년 4월 5일, 박정희는 군포 야산에서 식목일을 기념하여 오동나무를 심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청학연 대학생 놈들 보고를 들어보니 순 빨갱이들이야. 잡히기만 하면 모두 총살이야”¹²⁾ 아니나 다를까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판결이후 하루만에 소위 인혁당 재건단체 관련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로 인해 유가족들은 사찰, 빨갱이 자식, 생활의 고통 등의 간접적인 학살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형제도의 존폐논란을 떠나, 사형제도는 곧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빙자하여 기득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인권말살정책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또 다른 인권말살은 고문수사, 재판과정의 비민주성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먼저 고문수사를 통한 인권말살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당시의 고문수사는 소위 인혁당 재건단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을 조작하고도 남음직 했다. 수사과정에서는 민청학연, 인혁당 관련자들에게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고문수사의 기본적인 원칙일 것이다. 전창일 씨의 말에 의하면, “관련자들은 대부분 소위 물고문, 전기고문, 나체 통돼지 바베큐 고문 등을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탈장되는 사람도 있었다.”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고문수사의 증거들이 제출되고 있다. 시신을 확하였다는가라는 질문에 함세웅 신부는 “고문의 흔적 앞에서 혼 정권의 잔인성, 중정의 만행을 확인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문정현 시부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가 우홍선씨와 이수병씨를 집으로 안장하였다. 관을 열고 의사 입회하에 사진을 찍어 놓았다. 몸은 말할 수도 없고, . . . 우리로서는 고문조작이라는게 너무도 확실하다.”

¹²⁾ 신직수, “정보부,”유신수호 칼 뺍다, 114쪽, 한국방송공사,『디큐멘터리극장, 제16화 유신시대, 제2부 겨울공화국』, 1998.

당시 제한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 사제단의 발표에 따르면, “정치권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함에 그 존재의 의의를 갖는다. 반대로 정치권력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하여 정권의 존립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생명을 그 정치적 재물로 삼으려 했다면, 천인(天人)이 분노할 일이다. 인혁당 관계 인사들에게 가해진 고문행위는 차마 인간이라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참혹한 비인간적, 야만적 행위였다.”

이러한 고문수사 말고도 비민주적인 재판과정은 전시재판을 능가하고 있다. 여정남 씨의 상고이유서에서 잘 나타나 있다.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열람을 거부, 1심재판에서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진술할 일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등의 조건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은 소위 빨갱이를 조작하는 과정에 불과했고, 살인행위의 명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당시 군법회의의 변론에 나섰다가 긴급조치로 구속된 강신옥 변호사는 그 과정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재판과정은 곧 헌법개정운동을 한다는 학생전부를 빨갱이로 몰아 가지고, 큰 단체가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다하는 식으로 조작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조작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도 사법적 살인행위였지만, 대법원 선고 하루만에 사형을 집행한 것은 인륜적 실인행위였다. 인간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저항권 및 인간적 기본권이 말살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강신옥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지금 검찰관은 나라 일을 걱정하는 애국 학생들을 내란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을 걸어서 사형이니, 무기니 하는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을 악용하는 사법 살인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 . 악법은 차라리 지키지 않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부여된 저항권입니다.”

4. 재건단체 운동의 역사적 의의

1) 민족민주변혁운동의 역사적 계승

한국의 민족민주변혁운동은 국가보안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거의 소멸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에 처해 있었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제정·공포된 국가보안법은 민족민주변혁운동을 거세하는 국가권력의 법적 장치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1949년 한 해에 겸거·투옥된 사람들은 무려 118,621명이었으며, 1949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당하였다.¹³⁾ 1958년 조봉암 씨에 대한 학살 역시 이 법에 근거하였다. 물론 이 법은 1960년대의 반공법과 함께 반정부적이고 반체제적인 사람들을 탄압하는 주요한 국가장치였다.

민족민주변혁운동 세력들은 한국전쟁 이후 개별적인 수준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세조건을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조직적인 활동의 근거지가 전혀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에 조봉암 씨를 중심으로 한 진보당은 개별적인 활동가들을 결집시켜 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진보당은 조봉암 씨가 사형된 이후 자연스럽게 명멸하였지만, 4.19 이후 각각의 정치노선에 입각한 혁신정당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4.19 직후 혁신계는 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 사회당, 혁신당 등 4개의 혁신당으로 존재하였다. 그런데 소위 인혁당 재건단체의 주체들은 사회당의 청년조직인 통일민주청년동맹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산하 민주민족청년동맹, 그리고 4.19 당시의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의 운동을 계승하고 있다. 비록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¹⁴⁾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제1차 인혁당 사건으로 단절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이 투쟁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소멸되고 단절되어 가는 민족민주운동을 복원하는 운동이었고, 4.19항쟁 당시의 과제

13) 조국,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88년 여름 호, 332쪽.

14) 이종오는 이 운동을 “박 정권이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의 반민족성의 폭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일본 독점자본의 재침에 대한 민족주의 운동의 항거, 일제 군국주의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한다. 이종오, 「반제 반일 민족주의와 6·3운동」,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88년 여름 호,

이자 8.15 민족해방 이후의 지속적인 과제였던 “민주변혁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계승”¹⁵⁾하는 운동이었다.

소위 인혁당과 관련된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변혁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활동가였던 도예종 씨는 1961년 2월 11일 자 영남일보에 기고한 ‘노동운동과 통일’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노동조합의 필요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의 보장, 임금인상 투쟁의 정당성, 노동시간의 단축” 등을 주장하였고, 1월 22일 자 영남일보에 기고한 「경제적으로 본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글에서는 “자주경제의 지향, 민족해방의 지향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승만 정권의 원조경제정책의 문제, 반민족주의자들의 미청산 문제, 민족 주체주의의 문제, 민주적 통일의 문제, 지난의 해방을 위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시 지향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38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도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고, 민족민주변혁운동의 과제로 계승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다.

전창일 씨의 증언은 민족민주변혁운동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했던 소위 인혁당 재건단체 주체들의 사상과 의지를 간파할 수 있게 한다. “남북의 분단이 영구화되는 이승만 박사의 분열노선에 대해 저항을 했고, 이 박사가 단독정부, 단독국회를 세우자는 데 대해서는 통일국회, 통일정부를 염원하면서 저항의식을 가졌던 분들이다. 그 이후 북진통일정책에 대해서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전쟁을 반대했고, 또 다음의 군사정권에서 평화통일운동에 거의 다 나섰던 분들이고, 5.16 이후 군사정권에 반대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했다.” 이들은 민주정부의 수립과 민족통일의 달성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에 학살된 것이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과제가 학살된 것이고, 민족민주변혁운동의 이념적 좌표가 학살된 것이다.

따라서 재건단체의 주체들은 8.15 민족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지양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민족민주변혁운동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15) 김동춘,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88 여름 호, 43-44.

로 해결하려는 실천적인 활동가들이었다. 구체적으로는 4.19항쟁, 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 69년의 3선개헌 반대운동을 계승하고 있으며, 반유신투쟁 및 민족민주변혁투쟁인 79년의 남민전 운동과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주춧돌로 작용하고 있다.

2) 민주주의적인 생활정치의 일상화

박정희 정권은 여정남 씨를 매개로 하여 민청학연을 배후조종(背後操縱)하는 세력으로 소위 인혁당 재건단체를 조작·발표하였다. 이철의 증언에서도 드러났듯이, 분명히 여정남 씨를 비롯한 관련 주체들은 1964년의 한일협정 반대투쟁 및 69년의 3선개헌 반대투쟁 과정에서 민청학연 관련자들과의 역사적(정치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철의 증언에 의하면, 민청학연은 “각각의 인간관계를 충동원하여 투쟁의지를 확인하고 전국적 투쟁의 통일연대조직의 결서의 필요성을 제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재야원로(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연대를 모색하였고, 연합전선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민청학연은 조직이라기 보다는 반유신투쟁을 위한 투쟁기구였다.”

이와 같이 민청학연은 누구의 배후조종을 받았던 조직이 아니라 학생운동 중심의 반유신 민주회복 투쟁체였다. 역시 이철은 민청학연의 투쟁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녔다고 증언하고 있다. “① 학생운동의 지향과 민족민주변혁운동의 성격을 민중지향적으로 바꾸어 놓는데 일조, ② 3민선언은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 및 통일운동이 지향해야 할 기본성격을 최초로 이론화, ③ 군부독재 등장 이후 최초의 전국적인 학생운동의 창출, ④ 학생운동이 지니고 있는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담당, ⑤ 학생운동 세력으로서 운동의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세대 등이다.” 학생운동이 한국사회의 제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선도적 역할을 역사적으로 인정한다면, 당시의 민청학연 역시 학생운동의 역사적 임무와 역할을 계승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일단의 세력으로부터 배후조종된 것으로 평가한다면, 민청학연을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단체 주체들은 민청학연과의 조직적인 관

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역사적(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단지 민족민주변혁투쟁의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사람들간의 관계를 지속하였던 것이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역사적인 과제를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도예종 씨 유가족의 증언에서 잘 드러난다. “일 당하고 나니 ··· 아저씨가 통일, 통일해도 사실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못 느꼈는데, 참말 통일이 되어야겠다. 통일만 되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지.”

이들은 또한 일상적인 생활과 민족민주변혁운동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결합시켰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혁당 재건단체 관련자들의 다양한 직업분포와 연령에서 찾을 수 있다. 전민학연 및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으로 180여 명이 기소되었다. 이 중에는 학생 114명, 현직 교수 2명, 정치인 10명, 일반인 17명, 종교인 10명, 변호사 1명 외에 교사, 회사원, 전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인혁당 재건단체 관련자 21명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생활인들이었다. 연령 역시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물론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분포 역시 비밀공작수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상적이고 다양한 생활영역 속에서 한국사회의 제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한 역사적 의식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생활정치의 공간을 확장시켰다. 주체들간의 역사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들은 민주적인 생활정치의 주체로서 민족민주변혁운동을 평생 동안의 삶의 가치이자 과제로 여겼던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역사적으로 청산해야 할 민족민주적 과제의 계승

소위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의 주체들은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학살되었지만, 그들의 정신만은 현재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제반 모순을 지양하는 과제로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권보위만을 위해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고 현재에도 다양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권력불록을 교체시키는 과제, 권력의 지배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현재에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보

안법을 개폐하는 과제, 그리고 실질적인 민주변혁과 민족통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과제 등이다.

군부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과제들이 소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게 떠 넘겨지는 경우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부르주아적인 개혁을 추진했을지라도, 그러한 개혁의 동력은 친일·친미·반공세력, 즉 한국사회의 역사적인 기득권 세력들과의 연합에서 형성되었다. 개혁의 내용 역시 민족민주변혁운동 진영에서 요구했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변혁을 추구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개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만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개혁은 오히려 역사적인 기득권 세력의 역량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그런데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드러냈던 당시의 제도권 야당의 태도를 반추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인혁당 재건단체의 관련자들이 사형된 직후였던 75년 5월 21일 청와대에서의 박정희·김영삼의 회담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나마 존재의의조차 미약했던 제도권 야당의 기회주의적 모습은 유신독재와 싸우려는 의지 대신에 박정권의 반공안보논리에 안주하였다. 그래서 11월 9일에는 사실상 전시입법안인 사회안전법, 방위세법안, 민방위기본법안 등을 통과시켰다."(서중석; 1988) 사회체제의 분열과 북한의 도발위험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진행되었던 친일·친미·반민주·반공정권과의 '사회통합적 권리분점'은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정치형식으로서의 '의회주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문민정부 혹은 국민의 정부'라는 정권교체와 역사적인 과제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김대중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개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정책 또한 역사적으로 청산해야 할 민족민주적 과제와 상당히 거리가 멀다. 개혁의 저항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권은 민족민주적 개혁과제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주요한 것들을 예로 들면, '준법서약서 제출,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체입법안의 마련 및 제한적인 개정의 의지, 사회적 기득권 세력들과의 긴밀한 연

합, 실질적인 민주변혁운동과 민족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탄압' 등이다.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의 주체들은 노동자·민중들의 이해가 관철될 수 있는 민주적인 국가권력의 수립과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지향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과제의 수행에 질곡으로 작용하는 제반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지적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반민족·반민주 행위자 처벌법을 부활, 국가보안법의 폐지, 노동자·민중들의 제반 기본권의 완전 보장' 등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의 현재적 과제

대통령 자문기구인 김대중 정권의 새천년준비위원회는 '평화, 환경, 인간'이라는 21세기 국가·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인간 중심의 사회체제를 위해 국가권력의 폭력적 사건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밝혀내고, 21세기의 새로운 '국가·사회 패러다임'에 반영시키느냐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주체들은 현재의 실질적인 민주개혁의 주체로 또는 새로운 국가권력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주춧돌로 부활되어야 한다.

함세웅 신부의 중언이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의 발생 원인과 그 성격, 그리고 현재적 과제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독재자들의 정치적 야욕이겠지요. 좀 멀게는 남북분단의 결과나 유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한에서는 친일파가 대부분 강한 반공주의자가 되었거든요. 자기들의 잘못된 과거를 덮기 위하여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반공을 외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남한에서의 친일잔재는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훌륭한 분들이 반공 이데올로기의 의해 희생, 집권연장을 위해 희생, 학생들을 탄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말살하는 과정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은 친일·친미·반민주·반공정권, 소위 '2친(親) 2반(反) 정권'의 억압적 폭력으로 조작되

었다.

따라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부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민족민주 진영, 시민단체, 종교단체만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전권을 위임받은 이 위원회가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에 대한 진실뿐만이 아니라 제반 조작·의혹사건들을 세롭게 조사·규명해야만 한다.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공히 '역사의 진실규명 운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권은 단지 이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보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조사과정에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사회적 권력블록과 정치적 지배블록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주체들에 대한 복권이 추서되고, 희생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제반 민족 민주열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모행사가 정례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현재적 과제를 접근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80년 5·18광주민중항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항쟁주체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들이다.

첫째, 피해 당사자 중심의 시각이 극복되어야 한다. 사건의 피해세력은 조작되어진 소수이자 다수의 국민대중들이었지만, 사건의 주모세력은 국가권력에 둘러싸인 한국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었다. 사건의 주모세력들은 굴종할 수 있는 다수를 선택하기 위해 굴종하지 않는 소수를 학살하였지만, 굴종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 역시 국가권력에 의해 목숨만을 유지하는 간접적 학살을 당한 것이다. 물론 학살의 고통을 짊어져야만 했던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위에서 제기한 응분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 중심의 시각에 매몰될 경우에는 응분의 조처에 한정되는 계승운동 또는 응분의 조처를 둘러싼 분열주의적 갈등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는 국가권력의 폭력적 학살이 더 이상 자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존 사회구조의 반민주적인 요소를 극복함과

동시에 민족적인 과제를 실현하는 차원의 시각이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자행되었던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은 현실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의 사건은 또한 미래에 바라볼 수 있는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 성장의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던 1960~70년대의 노동자·민중들은 1999년 현재 IMF관리체제에서 국가권력의 간접적인 학살정책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과거의 고통은 새로운 형태의 희생으로 다가왔으며, 현재의 희생은 미래의 다양한 고통의 양태를 예견해 주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학살정책은 민족분단의 현실을 악용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찾았다. 반공 이데올로기의 의한 계획적이고 간접적인 학살은 이제 종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족통일운동의 과제가 국가주의적인 방식 혹은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권력이 마부가 되고, 억압적 국가장치가 수레바퀴가 되는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불행한 역사는 단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조작·의혹 사건의 '희생자 추모운동'이 현존 사회구조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요소를 청산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는 운동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대상, 「친일세력 재등장의 정치구조」, 이수인 엮음, 『한국 현대정치사1』, 실천문화사, 1989
 김동준,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역사 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88년 여름.
 김무용, 「한국 현대사와 5.18민중항쟁의 자화상」, 학술단체 협의회,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
 김세균, 「민주주의 이론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정치』, 현장에서 미래를, 1997
 김영수, 「한국 노동자 정치운동과 민주노조운동간의 연대 관계 : 1970년에서 1995년까지」, 한국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2.
 도예종, 「경제적으로 본 통일의 필요성」, 영남일보, 단기 4294년 1월 22일자, 1월 24일자.
 도예종, 「노동운동과 통일」, 영남일보, 단기 4294년 2월 11일 ~ 12일자.
 도예종, 「항소이유서」, 1965년 3월 2일
 민청학련운동 계승사업회, 『민청학련운동 자료집 - 비상보 통군법회의 판결문집』, 1994
 민족문제연구소, 「그 치욕과 영광의 삶」,
www.banmin.or.kr/main.html.

서울 형사지방법원, 「판결서」, 1965년 9월 21일
 서중석, 「3선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88년 여름.
 안진, 「미군정기 억압기구 연구」, 새길, 1996년.
 유한종, 「혁신계 변혁·통일운동의 맥」,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89년 여름.
 이종오, 「반제반일 민족주의와 6.3운동」,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88년 여름.
 인혁당 대책위원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1998.11.
 조국,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88. 여름
 편집부 엮음, 『공안사건 기록 1964 - 1986』, 세계, 1986
 한국방송공사, 『다큐멘터리극장』, 제16화 유신시대, 제2부 『겨울공화국』, 1998
 Guillermo O'Donnell, "Transition, Continuities and Paradoxes", in S. mainwaring, 1992
 Goran Therborn,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권력』, 최종열 옮김, 백의, 1994
 Nicos Poulantzas,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London, Verso, 1978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과 법

박홍규(영남대 법대 학장)

1. 머리말

1975년 4월 9일은 국제적으로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되었다. 바로 전혀 터무니없이 조작된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으로 함) 재건위 사건 관련으로 도예종 씨 등 8명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 4호, 국가보안법, 내란에비음모, 반공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이 된지 하루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이다.

이 사건은 사실 1964년에 시작되었다. 당시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야기된 6.3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그해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고문으로 소위 제1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통한 조작임이 밝혀지자 검찰은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하는 사법파동이 발생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검찰 총장에게 압력을 가하여 구속마감일 기소장을 발부하게 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관련자들이 인혁당과는 무관하게 실형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어 10년이 지난 1974년, 학생들의 반유신 저항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하 민청학련으로 함)을 조작하고 그 배후라는 이유로 인혁당 관련자 23명을 다시 체포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 밀실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여 탈장이나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고, 고문에 의해 조작된 피의자 조서만으로 1974년 5월 27일 기소되었다. 군사법당국은 재판에서도 원벽

한 조작을 위해 피의자들의 법정 진술을 변조, 날조했고, 동년 6월 15일의 보통 군법회의 제1심 재판 이후 10개 월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려져, 그 중 8명은 상고기각 19시간만에 사형되었다. 이것이 제2차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이다. 정부는 그후 이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추방, 투옥했다.

심지어 제2차 사건의 제1심 공판 도중 강신우 변호사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10년형을 받았고,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는 일체의 진술 기회가 박탈 당했으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신청과 보충신문도 거부 당했다. 그리고 제2심 개정전 변호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열람을 요청한 것도 거절 당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기 전까지 가족과의 면회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것이나 당시의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요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김대중씨와 그가 이끈 신민당 그리고 천주교 측과 구속자 관련단체가 그 앞장을 섰다. 당시 동아일보 백지 광고에 인혁당의 무고함을 알리는 광고를 연일 게재한 시노트 신부는 그 일로 거의 거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없다.

1998년에 들어와서 11월 4일부터 유가협 중심으로 민주열사의 명예 회복과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

사당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으나, 동 1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무총리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회의 의혹은 1999년 1월 7일의 임시국회 폐회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되 의문사 진상규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법안에는 그 조사 대상에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하튼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올 7월에 와서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3개월이 지금까지도 그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인권법안과도 관련된다.

한편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 사건에 악용된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구 반공법 등과 함께, 판례사상 이외에 국민은 아무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한데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다음 해에는 10만여명이 그 법에 의해 입건되었고, 박정희집권 18년간은 6천여명이나 구속되었으며, 전두환시절에는 매일 1명꼴로 입건되었다. 그런데 소위 문민정부, 나아가 국민정부라는 지금, 민주화되었다는 지금도 구속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국민은 없다는 헛소리를 원간 조선에서 외치고 있다.

소위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권의 집권 1년만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김영삼 집권 초기보다 4배나 많은 413명에 이른다. 지금 김대중 정권은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제 조항을 폐지하는 생색내기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대해서도 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63명은 개정불가 선언까지 했고 조선일보까지 가세하고 있다. 성경을 들먹거린 한나라당 의원들을 천주교측은 <독사의 족속들>이라고 정죄했다. 그런 정죄를 했던 8월 26일의 천주교측 2천59인의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그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끝없이 이어져왔으나 정치권은 아무런 반성없이 당리당략적 이념 논쟁

에 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강력하게 권고 되기까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어 왔다.

2. 인혁당 재판에 대한 분석

(1) 1, 2심 재판

1972년 11월의 유신헌법이 제정된 이후의 소위 유신시대는 긴급조치의 시대라고 할만큼 1974년의 그 제1호 발표이래 제9호까지 긴급조치가 그 시대를 지배했다. 그것은 강압적인 유신체제에 대해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그런 비판이 있으면 사형까지 처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민청학련과 그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사건이었다.

1974년 1월 8일에 발표된 긴급조치 제1, 2호는 개헌 주장, 비방, 유언비어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하고 15년 이하의 형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그 이를 뒤인 1월 10일, 이철 등을 중심으로 한 민청학련이 결성되었다. 1월 15일, 백기완과 장준하가 구속되고 2월 1일, 이들에게 각 15년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긴급조치 관련자에게는 죄고 형을 그대로 내린다는 이유에서 <정찰제 재판>으로 불렸다.

경제안정을 명목으로 한 긴급조치 제3호에 이어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가 발동되어 민청학련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간첩은 현상금이 30만원 이었으나 긴급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2백만원의 현상금이 붙었다. 4월 16일, 민청학련의 유인태가, 4월 17일, 인혁당의 여정남이, 4월 18일, 김용원과 이수병이 영문도 모르고 체포되었다. 4월 24일, 이철이 체포된 다음날인 4월 25일, 신직수 장악정보부부장이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했다. 그 때는 인혁당이 단순한 배후조직으로 발표되었다.

인혁당 관련자들은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 도예종은 상고이유서에서 중앙정보부가 각본과 도표를 만들어놓고 그것에 맞추려고 고문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50일간의 중전 조사에서 수없이 고문을 당해 중정 측이

약을 사줄 정도였고, 그후 검사에 의한 취조시에도 고문에 의해 수차례 졸도했다. 민청학련 관련자 이철도 인혁당 조종이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육군 특무대를 제대했고 과거의 인혁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하재완은 전기고문으로 인한 탈장 등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 그는 진술서를 보지도 못하고 강제로 징장을 쳐어야 했다. 고문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송상진은 동물을 끊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우홍선은 고문으로 심장이 파열하는 듯한 고통을 받았고 구속 4일만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어 누워도 좋다는 외허증을 받았다. 전창일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고 서도원도 다리에 자국이 남도록 고문을 당했다.

이어 5월 27일,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을 4월 발표시의 민청학련 배후조직이 아니라 <인혁당 재건위>로 발표했다. 그리고 총 1,024명 구속, 745명 훈방, 253명 군사재판 송치, 다시 73명 석방으로 최종 기소된 것은 180명이라고 했다.

재판은 1가족 1명만의 방청이라는 원칙이었으나 그나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재판 중 면회는 일체 금지되었다. 6월 15일,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판이 비공개로 따로 열렸다. 변호인의 증인 채택도 없었다. 7월 9일, 민청학련의 결심이 있고 <사법살인>, <차라리 내가 저기 앉겠다>,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발언한 강신욱 변호사가 구속되었다. 이는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변호로 인한 변호사의 법정 구속이었다.

변호사 김종길은 우홍선의 증거로는 FM에 다이얼이 고정된 라디오 한 대뿐이고, 고문과 억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사관의 요구대로 진술한 피의자 진술조사서, 자술서 등을 유죄의 유일한 증거로 함은 채증법칙에 위반되고 심리 또한 미진하여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 함정호는 증인채택도 기각시키고 증거물도 압수해가버린 이런 재판정에서 변호사로 피고인 보기에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도예종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고, 하재완은 <나는 중앙정보부의 과잉 충성으로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조작에 의한 형의 선고에 항의했다.

7월 11월, 인현당 관련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즉 비상고등 군법회의 제2 심판부(재판장 육군중장 박현식 외 4명) 판결문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1, 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으로 서도원 외 6명을 각 사형, 전창일 외 7명을 각 무기징역, 황현승 외 5명을 각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7월 22일, 민청학련 관련자는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었으나 인혁당 관련자는 제외되었다.

1974년 9월, 제2심은 사실신문도 없고 변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을 확정하는 것으로 끝났다. 최후 진술에서 우홍선은 <나는 피란불을 보고 횡단보도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중정 차에 치인 것이다>라고 했고, 임구호는 <내가 공산주의자라는 선물을 주었는데 이 자리에서 검사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했다. 부인들이 구명운동을 벌이자 중정은 그들을 끌고 갔다. 그곳에서 임인영은 남편 이수병의 공판조서가 다음과 같이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즉 공판조서 408쪽에는 <피고인들이 모여 어떤 조직과 결의를 하였는가?>라는 신문에 이수병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으나 조서에는 <네, 혁신계 동지들을 규합, 과거 인혁당과 같은 통일적 조직을 구성, 대정부투쟁에 합의하고 …> 등으로 변조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변호사인 김종익과 조승각도 확인한 내용이었다.

조작 의문에 대해 종교계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수는 적었다. 천주교측과 오글 목사, 시노트 신부 정도였다. 1975년 2월 24일, 당시 법무부장관 황산덕은 논리적으로 심증이 있다고 하면서 조작설이나 석방요구를 반공법 위반으로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황산덕은 당시 우리 나라에서 형법 및 법철학 등의 태두로 공인된 자였다.

(2) 대법원 재판

1975년 2월 15일,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석방되었으나 인혁당 관련자들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이 된지 하루만인 4월 9일 사형을 집행 당했다. 여정남을 포함한 8명이었다. 먼저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을 물리쳤다. 그 이유는 헌법 제53조 2항이 긴

급조치에 의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형법 제1조 3항이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고, 긴급조치는 제2심 이전에 해제되었으므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경과규정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인혁당이 과거 반공법 위법으로 처단되었으나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단함은 법리 오해로 위법이라는 주장을 각각 별개의 단체라는 이유로 부정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1조의 정부 참칭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죽하다고 하는 이유로 역시 물리쳤다.

그리고 비공개재판을 강행하여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것으로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1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최후 진술, 변호인 신문권, 변호인 변호권의 박탈 또는 심한 제한, 제2심에서의 사실 심리 생략 등, 공판 심리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한 재판의 무효 주장에 대해, 역시 대법원은 제1심에서 충분한 보장이 있었고 제2심의 진술권은 반드시 인정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에서 부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판사 이일규가 소수의견을 썼다. 즉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가 일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 판결을 파기한 다음 사실인정을 다시 하고 양형을 달리 하였는데,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변론을 시행한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한 것이었다.

또한 증거조사 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 즉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증인 신문 참여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했고, 검찰관의 증거는 모두 채택하면서도 변호인의 증거는 모두 기각한 점이 증거 채부에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판장의 가 있고, 증거는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 등으로 부정했다.

마지막으로 채증법칙에 위반했다는 주장, 즉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검찰관의 피해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자필 진술서와 그것이 특히 신빙성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유죄 증거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한 위법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되었다고 반론했다. 또한 임의성의 입증 책임은 검찰관에 있는데 피고인에 그 입증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 가치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반론했다. 나아가 증거없는 사실 인정에 의한 원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증거의 취사 선택권과 사실인정은 심판관의 전권이라고 주장했다.

(3) 재판에 대한 법적 평가

유신헌법은 헌법 이론상 자유민주주의를 정지하고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채택한 점에서 헌법의 동질성을 파괴하여 헌법 개정의 한계를 초월한 악법이었다. 따라서 그것에 근거하여 내려진 긴급조치도 당연히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긴급조치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박탈할 수 있게 규정한 점에서 그 불법성은 명백하나 지금 우리는 그 불법성을 근거지울 수 있는 실정법을 찾을 수 없다. 적어도 유신헌법에 의해 긴급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 점에서 긴급조치 자체의 위헌성을 논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헌성 부정은 그 나름으로는 합법성을 갖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의 본질상 기본권 제한은 절대로 그 목적일 수가 없고, 하나의 수단 내지 방법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의 그것은 기본권 제한을 그 목적으로 하는 오용된 국가긴급권의 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저항권의 행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유신헌법 당시의 대법원은 이러한 긴급조치의 위법성과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위헌성을 부인한 점은 당시의 대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나, 수사 및 재판과정은 명백하게 당시의 실정법을 위배한 것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중앙정보부 및 검찰의 수사과정은 비인간적인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하는 잔인한 범죄행위로 점철되어 있다. 나아가 기소단계에서 정치적 압력으로 기소가 강제되었고,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불법에 의해 피고인들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제1, 2심은 물론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공소장과 거의 같았다. 적어도 절차상 문제가 되는 중요한 열거지만 추려보아도 다음과 같다.

1. 공판이 있기 2, 3일 전까지도 변호인측이 진술서의 사본을 소유하기는커녕 접할 수 없었다. 변호인측은 검찰측이 가지고 있는 진술서 사본만을 볼 수 있었다.

2. 공소장과 진술서는 정식으로 그 증거능력이 입증됨이 없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3. 검찰측이 증거를 대기 위해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허용되지 않았다.

4. 42명의 검찰측 증인들은 피고측 변호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했다. 그 시간에 변호인들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5. 재판은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6. 증거는 고문을 통해 조작한 것들이었으나, 법원에서 그런 주장은 완전히 부정되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문당했고 자술서는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검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고문을 당하지 않은 증거라고 말했다.

7.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의 방청은 금지되었다.

8. 정부 기관지들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피고인들의 유죄를 선전했다.

9. 당국은 공식적인 재판 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심지어 공판 조서가 변조되었다.

10. 피고인들은 수감중 가족의 면회를 거절 당했고 변호인들의 면회도 불법적으로 제한되었다.

당연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이를 부정하지 않으면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은 달성될 수 없다. 법원은 고문과 그 증거능력 부정을 인정하지 않아 불법수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특히 인혁당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 처형이 행해져 <

마치 즉결처형을 하듯, 아니면 긴급한 작전을 수행하듯> 사형이 집행되어 재심의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 자체에 대한 재심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 1호에서 말하는 재심이란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 증거임이 증명되어야 가능하므로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동조 제5호에서 말하는 신증거에 의한 재심으로 다툴 가능성은 있으나, 원판결에서 실질적 판단을 거친 증거와 동질의 증거는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게 보여지므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재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3. 인혁당 사건 관련 법률의 분석

(1) 국가보안법

인혁당 사건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의 저촉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사실상 그 해당 사실이 모두 고문으로 날조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그 법들에 저촉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것을 이름에 하는 어떤 생각도 금지한다.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 김대중 정권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7조의 소위 친양고무죄이다.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등의 법적 기준이 몹시 모호하여 그 남용이 문제되어 온 그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90% 이상에 적용되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몇년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기본적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보안법의 다른 규정들도 몹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탄받아 왔다.

또한 동조 3항의 이적단체 조항 역시 남용되어 1965년 인혁당 아래 96년까지 54개 단체가 인정되었고, 특히 김대중 정권하에서 한총련이 그렇게 규정되어 정권 출

법 후 1년간 182명이 구속되어 총구속자의 반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동 5항의 이적표현물 조항에 의해 사회과학의 고전적 저작이나 북한관련 저작들을 출판하고 읽었다는 이유로, 또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제국주의로 비난하였다거나 미군이 보유하는 핵무기의 철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에 반대하여 다른 통일방안을 주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받았다. 그 결과 1974년부터 1995년까지 도서 1,72종, 유인물 1,584종이 유죄로 선고되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만이 아니다. 제2조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하는데, 반국가단체란 북한을 비롯한 반체제적인 국내외의 모든 단체를 말하는 것이나, 이미 정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그 수괴를 주석이라고 부르는 모순 등이 문제가 된다. 조총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제3조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및 가입 권리 등에 대하여 사형까지 부과한다. 이 조항은 동 제7조의 이적단체의 결성과 가입에 대한 처벌과 함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현재까지 사노방 등 20여개 단체가 처벌을 받았다.

또한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행하는 50여개의 행위유형에 대해 사형까지 부과하며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경우도 처벌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간첩 및 목적수행의 경우, 그 내용이 되는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은 남한에서 자명하고 당연한 상식적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최근의 사례로는 홍성역씨 사건이 있다.

그리고 제6조가 처벌하는 반국가단체 지역에의 잠입 및 탈출에 대해서도 사형까지 부과하여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최근의 사례로 박용길 장로와 문규현 신부의 처벌이 있다. 기타 동법은 제8조에서 반국가단체와의 합 및 통신죄를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제10조에서 불고지죄를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전향을 강요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 고서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하고 있으며, 그 강요를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들 보안관찰법(과거의 사회안전법)에 의해 2년 이상의 보안감호에 계속 처벌로써 역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의해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제한하여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타인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포함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법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예방하기보다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용되어 왔다. 또한 그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적용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구속을 비롯한 항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자주 고문을 비롯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가 가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무엇보다도 사상의 자유를 억누른다. 사상이 부재하는 정신의 사막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른 모든 인권과 함께 사상의 자유는 근대현 법상 가장 중요한 원리적인 기본권이다. 그것이 없이는 배부른 돼지일 수는 있어도 '생각하는 인간'일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치안유지법 등으로 사상을 탄압한 일제시대, 나아가 유교사상 이외에는 모든 것을 사문난적으로 엄벌한 봉건사회의 권력체질에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법이 현법은 물론 국제인권 규약에도 위반된다는 이유에서 국내외에서 그 개폐를 요구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그런 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유일하게 우리와 유사했던 대만에서도 이미 그런 법을 폐기처분했다. 오늘날 구가되는 국제화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상의 자유를 국가가 규제하는 국가주권의, 전체주의사상에 뿌리박은 국가보안법은 어떤 식으로든 개폐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은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는 허구이다. 진정한 민주화는 국민의 인권보장에 있는 것이고, 모든 인권의 출발은 생각하는 자유의 허용에 있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고서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다.

문제는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중인 자들은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및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분류되고, 그들이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행정법상의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향제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정상적인 의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처벌받고 석방된 사람들에게 행정처분에 의한 신고의무를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강제하며(거부시 유죄판결을 받음) 이동할 자유, 통신할 자유를 포함한 사생활의 자유 등과 함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의 법적 보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28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요 내용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 재심(제4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 제5-6조), 보상 및 지원금(제7-22조), 시효(제22조) 등이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유가협 등과 협의를 거친 국민회의 법안이 국회에 제기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그 내용만을 간단히 요약한다.

이 법안은 1969년 8월 7일,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안 발의일로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규정한다. 그 실시를 위해 9인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두고, 특별 재심도 인정한다. 기타 기념사업 등이 규정된다.

그런데 특별재심의 사유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의 개념 규정이몹시 추상적이어서 인혁당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긴급조치와 함께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문이 있고 긴급조치에 위배된 혐의를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개념에 그러한 취지를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 법안과 달리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인권위원회법안>과 직결되고, 법안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다. 여당이 제안한 법률안은 39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요 내용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조직(제3-18조), 진정과 조사 및 고발 등(제19-26조), 구제조치(제27조), 공소시효의 정지(제32조) 등이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중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문사'(제2조 2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위원의 결격사유(제8조)에 공무원이 제외되어 있는데 공무원에는 교육공무원도 포함되므로 국립대 교수들이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은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게 되는데(제26조), 그 의결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일반 의결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제6조). 진정 내용이 사실인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특별하게 어렵게 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 일반 의결과 같이 함이 옳다.

넷째, 공소시효의 정지(제32조)는 위원회에 의한 조사 개시(제22조)시로부터 위원회에 의한 결정(제28조) 시까지이나,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의 공소시효의 적용제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인권법안

1999년 3월 3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 제정과정부터 비민주적이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유명무실한 약체 기구로서 법무부 보조기구에 불과한 인권위원회의 위상에 있었다. 게다가 그 설립과정이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도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점이었다. 나아가 그 관할 범위를 한정해서 기본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도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어서 8개의 조사대상 범위 밖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바로 각하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 이러한 거부 사유가 있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조사는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 사유는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은 인권위의 권한이 시정권고에 그친다는 점이었다. 곧 시정권고를 들지 않는 경우 아무런 강제조항이 없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응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개정되어야 했다.

1999년 9월 14일, 국민회의는 '인권법'의 이름을 '인권 위원회법'으로 바꾸고 위원회 소속 직원을 민간인으로 하는 내용의 '인권위원회법'안을 마련했다. 그 속에는 '인권위는 정부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재정정상 독립을 유지하며 구성원들은 신분상의 보장을 받는다'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또한 예산 지원 과정에서 법무부의 관여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총리실이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인권위에 자체 예산 편성권은 부여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면 인권위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한 이러한 보완이 위에서 지적한 중요한 조항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세칭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문제에 대하여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1.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의 지난 과정

1) 인혁당 사건의 배경

4월혁명의 역사적 성과를 짓밟고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삼선개헌을 통한 12년 철권 통치로도 모자라 영구집권을 위한 반민주적 유신헌법을 공포하였다. 박 정권은 겨레의 평화적 통일염원 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선거로 발생될 혼란을 막고 나라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유신헌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유신헌법은 곧바로 민주주주의를 압살하고 민족의 분단을 고착시키려는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로 규정한 국내외 민주세력의 결사적 저항에 부닥치게 되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고, 민주세력의 저항을 일거에 말살시키기 위해 74년 4월 세칭 '인혁당재건단체 사건'(이하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관련자를 투옥, 살해하였다.

인혁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과 의혹이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국제법학자 협회, 앤네스티 등 국외단체들과 가톨릭정의구현전국시제단 등 종교계와 양심적 인사들의 저항과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작과 은폐를 통해 억지 처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위기의식의 산물이며, 한편으로는 독재정권의 폭압적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인혁당 사건의 수사조작을 책임진 당시 중앙정보부 6국장 이용택 (현,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은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이라는 대국민 경고와 협박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일체의 보도를 검열 차단하였다. 또한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사건의 중심인물인 7명과 민청학련과의 관계를 증언할 유일한 인물인 여정남 등 전원을 사형에 처하고, 검거에서 형 확정까지 1년 여 간동안 적계 가족조차 면회 및 서신을 금지하여 그 분들의 주장과 사상 혹은 반유신 민주화운동에서의 역할등 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2) 25년 째 이어져 오는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박정희 정권은 처음 이 사건을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발표하였으나, 국민적 지탄과 조작의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자 수사 발표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이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을 분리하여 재판하였으며, 구속한 지 6개월이 안돼 민청학련 관련자 중 극소수를 제외한 전원을 석방함으로써 인혁당 사건을 세간의 관심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은폐될 수 없었으며, 김지하씨가 '고행 1974'에서 인혁당의 고문조작설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75년 4월 9일 사형집행 이후 구속자의 석방과 진상규명 등을 각계에 탄원하고 호소하는 것은 가족들의 뜻이었으며, 이마저 소위 박정희 정권의 탄압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 민주항쟁을 경과하면서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통일운동은 대중적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을 다시금 역사 속에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89년 4월 9일 "민족자주평화통일 대구경북회의"가 중심이 되어 인혁당 사건 희생자에 대한 최초의 공개적 추모사를 "4·9 통일열사 14주기 추모제"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통일운동단체, 청년·학생 운동 및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마저 공안당국의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소위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 하에서는 추모비 건립문제를 둘러싸고 대구경북지역의 운동단체들과 공안당국의 대립으로 수명이 구속되고, 추모비 마저 탈취 당하는 사건을 놓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98년,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적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틀력 인권위원회가 실무를 맡는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가 구성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과 국회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을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인혁당 사건을 비롯, 민족민주열사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적 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이 운동의 지역적 실천을 준비하였다.

2.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의 의의

1) 부당한 권력에 의해 사법 살해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말살된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세상의 모든 죽음들이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외세와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역사와 양심의 부름에 따라 행동했다고 해서, 국가권력에 의해 모진 고문과 죽임을 당하고도 그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있을 때 그 원통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인혁당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박탈한 사건으로 그 어떠한 죽음보다도 부당한 일이며, 이는 반인간적, 반민주적 행위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의해 사법 살해된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 받은 개인의 인권을 회복하는 운동이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다.

2) 열사들이 추구한 삶의 지향과 실천활동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민족민중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주통일,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민중운동의 참된 지향을 세우는 운동이며, 외세와 매판독재세력들에 의해 왜곡·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이다.

외세로부터의 독립, 민주주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통일된 민족공동체 건설은 한 세기에 걸친 민족사의 과제였다.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은 커녕 식민지 시대를 계승한 분단조국의 질곡은 수많은 민중과 민주애국인사들을 피와 땀, 죽음의 대장정으로 나서게 하였으며, 열사들의 헌신과 민중들의 저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은 4월혁명과 한일협정 반대투쟁, 반유신독재 민주화 투쟁과 민중생존권 투쟁 등 5·16 쿠데타 이후 암흑기 한국 현대사 속에서 민중과 함께 민족자주, 민주주의의 실현과 평화와 번영의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실천적으로 헌신해 왔다. 그러므로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은 민족민중운동의 역사적 한 흐름을 복원하는 것이요, 외세와 매판독재세력에 의해 왜곡·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이다.

3)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은 냉전·반공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수구·보수적 지배세력에 의해 왜곡·굴절된 대구경북지역 민족민주운동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고, 오늘에 되살리는 운동이다.

한국현대사의 일각에서 대구경북지역이 독재와 수구·보수세력의 아성이라고 얘기하며, 지배세력들은 이를 지역적 특성으로 호도하기 까지 한다. 그러나 사실은 대구경북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4월혁명과 반유신독재 민주화투쟁 등 민족민주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한 시기 우리나라 민족민주운동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이 세칭 인혁당 사건의 조작 등 수차례에 걸친 집중적이고 폭압적인 탄압으로 단절과 정체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은 냉전·반공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수구·보수적 지배세력에 의해 왜곡·굴절된 대구경북지역 민족민주운동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고, 오늘에 되살리는 운동이다.

더욱이 최근 김대중 정부는 진정한 과거청산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에 기초한 민주개혁의 길을 걷기는커녕 소위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 등에서 보여주듯이 '유신독재의 망령'을 불러내고 이를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적 지원을 하겠다는 반역사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의 문제는 더욱 절실하고 긴박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개념과 내용

1)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개념 정립에 대한 문제

먼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개념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활동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개념을 바로 세우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의 방향을 확립하는데 우선적인 문제이다.

인혁당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이미 그 자체로서 역사적 실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나 정략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묵과되거나 덮어질 어떠한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의 핵심은 사건의 실제적 본 모습을 진실 되게 밝혀내고 그 정당성과 공과를 역사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인혁당 사건이 '조작'이라고 하는데 대해 또한 서로간의 오해와 혼란이 존재한다. 인혁당 사건은 인혁당의 실제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분명히 날조·조작된 사건이다. 그것은 인혁당 사건이 다루어진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수사에 의한 날조·조작된 진술조사의 원천 무효성, 공판기록의 조작, 증인채택 및 변론권 박탈 등

재판과정의 폭력성에서 나타난 원인 무효성, 가족의 면회와 일체의 서신조차 불허된 데서의 반인륜적 무법성, 그리고 법적 상식과 관행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즉결처형'식 사형집행과 유언조작, 시신탈취 등 이루 열거할 수조차 없는 원인무효의 조작 사건이다. 이것은 사건 관련자들이 어떤 사상의 소유자이며 조직의 실체성과 형식의 유무, 구체적 저항활동의 내용 등이 이 사건의 조작성을 전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과 '사건조작의 진상규명 문제'는 상호 대립되거나 어느 하나가 우선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관련 속에서 이해되고 규명됨으로서 참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인혁당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이라 함은 국가차원의 조사와 재심을 통해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독재권력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날조·조작되어 사법살해 된 사실에 대해 국가의 이름으로 사과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차원의 배상이 따라야 한다.

또한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의 '민주화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에 대해 성실한 조사와 검증을 바탕으로 역사적 재평가와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책적 개혁 즉 국가보안법등 반민주 악법의 철폐와 폭압기구의 해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의 내용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특별재심을 통한 사건의 조작에 대한 사실의 규명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물론 가혹행위의 실상, 재판과정의 폭력성, 조작성이 하나하나 밝혀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작업의 성과적 마무리가 당면과제이다.

둘째, 인혁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는 문제이다.

물론 이 부분은 재심의 진전 등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했던 인사들 및 가족들은 당시 실제 상황에 대한 증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시 실천활동의 지향과 목표, 구체적 활동의 내용, 삶의 태도 등을 숨김없이 증언해야 한다. 더불어 1차 인혁당 사건과의 연관관계와 그 관련자의 증언 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는 관련 생존자들이 이미 고령인 점이나 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대책위와 관련 학계 등에서도 인혁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과정이 성실히 이루어 질 때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역사적 객관화는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4.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의 현황과 당면과제

1) 현황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이제 일년 반이 지나고 있다. 그간 이 운동은 크게 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업을 돌아 볼 때 상호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며, 각자 주어진 과제와 판단에 따라 각각 적으로 활동을 벌여왔다.

활동내용은 주로 서울지역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주로 유가족이 중심이 됨)과 정치적 대응,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자료발간 및 대언론 활동(인혁당 사건은 최근 공영방송을 통해 몇차례의 기획물이 방영되었다.) 및 홍보매체 제작(인혁대책위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 중에 있고, '인혁

당 사건 백서'도 기획하고 있다), 법적 정치적 대응, 각 계 각종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의 동참을 조직(선언운동 및 대책위 참여조직) 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을 가장 앞서서 제기하였고, 그간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이지만 이 문제가 대구경북지역 운동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위치 지어져야 한다는 데는 커다란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대구경북열사대책위원회"에 각계 인사와 40여개의 노동·시민·종교·사회 운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의 의의에 대한 내용적 공유의 폭이 넓지 않으며, 사업의 진행도 크게 진전되고 있지는 못하다.

2) 당면 과제

① 그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을 딛고 특별법 제정의 성과적 마무리를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구경북 각계 인사 선언 발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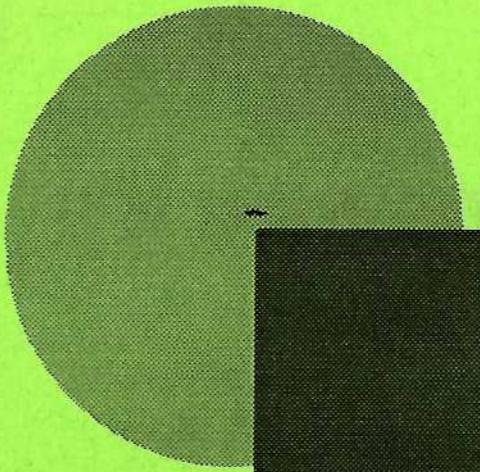
② 사회적 여론의 형성과, 대중적 운동으로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공판기록 공개 요구 및 자료 수집, 고문 책임자 등 관련자 처벌 투쟁

- 박정희 기념사업 반대 시도민 운동 전개 등

③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정신의 현제적 계승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시작되어야 한다.

④ 이러한 사업들을 앞장서 제기하고 추진해 나갈 조직적 주체성을 이루어내야 한다. (가칭)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천적 활동을 전개시키고 지역, 전국 대책위 및 각계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첨부자료 8 ~ 기타 자료1 ~ 각종 논문 모음

-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 부당한 권력의 '불처벌(IMPUNITY)'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의문사 해결을 위해
(김학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부당한 권력의 '불처벌(IMPUNITY)'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서론 : 민주적 이행과 '불처벌' 문제의 보편화

민주적 변화의 물결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가 지배했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 유럽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주화 바람은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로 확대되고 마침내 아시아, 아프리카로 불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 전체주의적 사회 해체를 경험하면서 다당제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냉전의 해소는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와 함께 그에 대항하기 위해 서방국가들에 의하여 건설, 지원받았던 군사정권의 기초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단선적이고 효율적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기존 체제의 저항과 타협, 혼란을 수반하기 일쑤였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독재정권을 유지했던 군부와 관료의 영향력이 새롭게 성립된 민간 정부에 강력하게 잔존하거나 민주적 정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약하여¹⁾ 과거의 비리와 사회악을 청산하

고 새로운 사회로 진전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벌어지는 논쟁 중의 하나가 바로 '불처벌' 문제이다. 이들 나라에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시절에 이루어졌던 인권침해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공 연한 살해, 고문, 납치, 강간, 약식처형 등 온갖 종류의 악행이 정치권력 그 자체의 정책으로 또는 하부통치기관의 관행으로 자행되었다. 이 잔혹한 인권침해의 주모자와 가해자가 그들의 정책을 뒷받침했던 권력의 붕괴와 더불어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민주적 정부 수립에 필수적인 경과조치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군사정권 또는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권력을 인수받은 체제는 대체로 과도적이거나 미온적이어서 이러한 대규모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실제 처벌의 법정에 서

1) 민간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약성을 지니게 되는바 이러한 지적은, 예컨대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도 타당하다. 오랜 군부의 세뇌의 영향력으로 '국가안보우월주의'는 민간영역에서조차 '불처벌(impunity)' 문제 극복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 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민주적 정부의 수립이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게 된 고위직 가해자들의 숫자는 극히 적은 일부에 제한되었다.²⁾ 이러한 '불처벌'의 현실은 개별 희생자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 전체에 긴장과 대결, 채워지지 않은 정의감과 분노의 분위기를 팽배하게 했다. 더 나아가 독재정권의 붕괴라는 전세계적 현상과 더불어,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현상³⁾임이 분명해지면서 세계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⁴⁾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 보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전인류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 '불처벌' 논의의 여러 쟁점

'불처벌' 문제는 여러 측면과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 개인과 국가 또는 사회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또 '불처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은 심각한 것이며 여러가지 요구가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입장과 요구 때문에 '불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과 논쟁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국민적 화해와 강력한 처벌의 요구 사이의 철학적·종교적·법률적 논쟁, '불처벌'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진실은폐의 문제, '불처벌'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명령복종행위였다는 변명, 공소시효 만료와 소급효금지 원칙의 허용성, '불처벌'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관할권과 송환의 문제, 형사적 처벌 외의 불이익으로서 공직추방의 문제 등에 관하여 각각 간략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2) 콜롬비아의 예를 들면, 1988년 11월 7일부터 12월까지 약 1년 사이에 일어난 2,533명의 암살사건과 239명의 실종사건 가운데 단지 105명의 군인만이 행정적으로 처벌받았고 또 그 가운데 15명의 장교들이 암살, 실종, 고문 등의 혐의로 면직되었다.

3) 이 문제가 유엔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도 세계적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여러 유엔·운전에서 이러한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4) '불처벌'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재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인권침해범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보듯이 아프리카에서의 노예화와 식민지 착취동이 오늘날 '불처벌'과 배상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기한 '정신대' 등 아동적 범죄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논의이다.

(1) 국민적 화해 요구와의 충돌

'불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논리들도 사면조치 과정이나 과도적 민간정부의 타협적 정책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의 인권침해 범죄자들을 끝없이 추적하다보면 국민적 갈등과 적대의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용서와 사면을 함으로써 국민대화합을 이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오래 지속된 내전의 종결에는 실제로 이러한 화합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제네바협약 제2의정서는 광범위한 사면조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 필요성과 아울러 화해를 강조하는 논리는 인권침해 범죄 처벌의 요구가 복수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상 응보주의는 형벌 부과를 정당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 훨씬 더 강력한 견해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정의에 기초한 것이라는 반론이다. 뿐만 아니라 처벌이야말로 재발 방지의 확고한 다짐이며, 인권 보장 및 민주체제 확립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주장이다. 즉 민주주의제도의 정착은 모든 제도와 단계에 대한 윤리적 태도의 회복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없이 '법 지배'의 원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상처에 연연해하는 것은 묵은 상처를 다시 열어채치는 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견해는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국가적 화해를 이루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국민적 화해는 용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그 용서는 망각이 아니다. 용서는 또한 무관심과도 다르다. 막상 용서는 보복이나 폭력보다는 더욱 용기있는 행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피해자와 그가 소속된 사회가 함께, 밝혀진 가해자의 참회와 재발 방지의 다짐이라는 조건을 성취해야 한다.

또한 범죄자 처벌은 그 희생자가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 중의 하나이며 배상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희생자는 진실 파악과 처벌의

실체적 조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비정부 인권단체들이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범죄자에 의하여 향유되는 '불처벌'은 동일한 범죄의 반복을 고무한다. 동시에 고통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회복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불가양의 권리임에 틀림없다.

또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용서'의 미덕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교황 요한 2세의 지적은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용서의 강한 요구가 정의의 객관적 요구를 암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정의는 용서의 목적을 이루고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이 주는 어떠한 메시지의 문구에도 용서나 자비가 악, 스캔들, 재앙, 중상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남용과 그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악과 스캔들에 대한 회복이 용서의 조건이 된다. 정의의 조건 충족이 필수불가결하며 그럼으로써 사랑은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게 된다.

(2) 진실 규명과 '불처벌'의 상관관계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와 조치는 먼저 진실 파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진실 규명이 없는 처벌이나 배상은 자의와 복수로 연결되며 마련이며 진실 파악의 노력이 없는 사연은 결국 불처벌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국민에게 알리는 조치는 모든 과거 인권침해사건의 해결을 위해 풀어야 하는 '첫 단추'이다.

이러한 진실 규명은 그 침해가 어떻게 준비되고 실행되었는가, 누가 지시하고 실행했는가,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등 해당 사건의 전체적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실의 모습은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대중과 국민 앞에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같은 인권침해 범죄는 한 개인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그 사회 전체에 대한 사회적 공공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러한 과거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 처리방식과 수준에 대한 여론을 형성

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여기서 진실의 '공식적' 공개라 함은 국가기관에 의한 전면적 객관적 사실조사를 뜻 한다. 언론에 의한 보도로서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공적 권위를 가진 중립적이고 전체적인 조사활동과 그 결과로 한 국가의 역사적 기록을 제대로 정립하고 해당 사건의 권위있는 해석을 마련하여 당파적 고려를 초월할 수 있게 한다.

실상 은폐는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을 야기한다. 원한과 분노를 되새기게 하게 마련이다. 특히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던 실종사건에서 그 가족들은 실종된 가족들을 찾아헤매며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알 권리⁵⁾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진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도 어렵다. 또한 이것은 가해자와 그 소속 부대 또는 집단이 역사의 심판을 피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방식은 다양하게 채택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되기도 했다.⁶⁾ 아르헨티나의 '전국실종자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으나 소환권, 압수수색권, 기소권 등이 없어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내기가 불가능했다. 또한 의회 내에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파라과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권,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아닌 대규모 인권유린사건 조사에 부적절함이 드러났다.

가해자 또는 그 집단은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자신과 그 집단의 기소와 처벌 가능성, 명예의 손상, 보복의 가능성에 생겨나기 때문에 극력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려 한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공모와 협력 사실, 해당 사건의 진실을 고백하는 대신 사연을 주는 등의 '플리-바

5) 실종자들의 운명에 대한 그 가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는 기존의 국제법 규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수 있다. 1949년 제네바 협약 부속 제1선택의정서(1977) 제3장 제32조가 바로 그것이다.

6) 1983년 12월 15일에 설치된 이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은 '실종자에 관한 전국위원회'이다. 이 위원회가 1984년 제출한 '눈까 마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군부 독재정권 시절에 야기된 실종사건을 집대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가진 한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하여 인권단체들의 협조조차 끌어내지 못했다.

기닝(plea bargaining)'이 제외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설사 어떤 정치적 압력과 복잡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사실조사가 어렵다. 가혹행위는 수 년에서부터 수십 년 계속되어 왔고, 그 증거는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다른 보복 또는 명예 때문에 피해자 자신이 무관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은폐된 사건을 드러내고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들일수록 비밀서류 등을 유지하는 특별한 문서 보관소를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이 보관소에 과거의 잘못과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주는 문서들이 대량으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그와 같은 문서보관소에 대한 접근은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국민적 수색작업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컨대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Stasi)'가 보관중 이던, 11만 명의 전속 직원과 14만 명의 밀고자들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에 관한 기록은 600만 파일에 이르렀다.⁷⁾ 이것은 80킬로미터의 선반에 놓인 분량으로, 남녀 노소를 불문한 동독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파일 관리대상에 해당할 정도였다.

이 엄청난 분량의 정보수집에 협조한 정보원들이 바로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맛보아야 했다. 폴란드에서는 현재까지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국가보안 협력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는데 따르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하원에서 내무장관에게, 지방정부 공무원으로부터 정부의 고위관료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기구와 협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일부 의원들은 그것이 1990년까지 모든 비밀서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하원의 결의와 모순된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국가기관, 국영 사업체 등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문서보존을 확보하는 법령이 1990년 8월 제정되었다. 문서보관소의 재조직과 공공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

7) 이들 파일은 사찰당한 사람,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비밀경찰이 지원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비밀경찰에 협력한 사람들은 파일 공개에 반대를, 비밀경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파일공개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 파일의 공개와 열람이 가능하도록 1991년 12월 20일 Stasi Document Law가 제정되었다.

서는 그같은 자료들이 파괴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면서 피해자들의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명령복종행위자의 책임문제

많은 인권침해사건의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상부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각처의 군사법정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은 상관의 명령을 항변사유로 제출했다. 그러나 그 같은 항변사유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전범의 경우 죄고사령관 또는 국가원수 한 사람에게 책임이 한정될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그 현장에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이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이 그 피고에 대한 면책사유는 되지 못하지만, 정의의 요구에 일치한다고 재판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처벌감경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⁸⁾

이에 따라 그 항변을 배척하고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도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랐다.⁹⁾ 오펜하임의 유명한 국제법교과서 제6판(라우터페트가 개정한 것)은 종전의 내용을 고쳐 책임을 인정했으며,¹⁰⁾ 이에

8) 또한 일본 동경에 설치된 국동국제군사재판소 현장 제6조는 "상관의 명령을 이행한 그자체는 피고인을 면책하게 하기에 충분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특히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서는 명령복종에 따른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 원칙에 처리했다. "이 조항[제8조]의 규정들은 모든 국가의 국내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군인이 전시국제법을 위반하여 살인을 하거나 고문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비록 그 명령이 현장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처벌감경사유로 활용될 수는 있다 해도, 그같은 잔혹한 행위들에 대한 항변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어떤 명령이 그와 같은 잔혹행위에 대한 항변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국가마다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명령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도덕적 선택이 사실상 가능했는지의 여부가 진정한 판단기준인 것이다."

10) 오펜하임은 그 교과서에서 "정부 또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투규칙을 위반한 군인은 전쟁범죄인이 아니며, 따라서 적은 그를 처벌 할 수 없다. 적은 그러한 명령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권리나 지휘관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그들을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타의 구제수단에 의존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맞추어 1944년 4월 영국의 군법교법을 고쳤다.¹¹⁾ 아르헨티나 군사법은 명령을 과장하여 수행함으로써 범죄적 행동을 저지른 하급장병의 처벌을 불허하고 있었다. 이 법 제514조는 하급장병은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장 확대하여 집행했을 때 공법으로서 처벌받도록 규정하여 그외의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장급장병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연방법원은 어떤 대령에 의하여 제기된 '명령수행'의 항변을 기각함으로써 위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르헨티나는 민간 정부 출범 3년 만에 대령급 이하의 군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법률(법률 제23, 521호)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단순 명령 수행자들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말았다.

(4) 공소시효와 소급효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독재정권은 피해자들이 국가권력과 밀착된 가해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법정에 세우는 것을 오랫동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공소시효가 진행됨으로써 더이상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절대적이며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건들에 대하여 기소가 진실로 불가능한가.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중의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공소시효를 제거함으로써 지금도 계속 처벌하고 있다. 독일에서와 같이 국내법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사례, 영국 프랑스 등에서와 같이 특별법을 두어 처벌을 가능케 하는 사례,¹²⁾ 1968년 유엔이 제정한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관행과 선례에 따라 그 후 독재정권에 의하여 벌어진 각종의 잔혹한 인권침해 행위 역시 비인도적 범죄의 유형에 속하며, 이러한 '국제적 범죄'는 마땅히 시효의 적용이 배제

11) 그 교법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군인이거나 민간인이거나를 막론하고 정부나 상관의 명령 또는 국내법령에 복종했다는 사실은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며 단지 처벌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12)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줄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각국의 나치 관련자 처벌법의 현황」, 정신대문제에 관한 제2회 한일 학동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 [미출판] 참조.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 발전해왔다.¹³⁾ 공소시효를 더 합리적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도 있었다.¹⁴⁾ 그러나 국내 입법과 관행은 여전히 엄격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소시효 부적용 이론에 따르려는 의지가 대체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체로 인권침해범죄에 해당하는 고문, 살해, 강간, 약식처형, 불법구금 등은 범행 당시의 각국의 형법에 비추어서도 불법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의 국내법 체제가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사후 입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된다. 이론바 소급효의 인정문제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아래 소급효의 금지는 근대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원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정에서 예외를 두게 되었다. 이론바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등이 그것이다. 나치와 그 협력자에 대한 처벌을 둘러싼 적법성 논쟁이 심하게 일었으나 위와 같은 죄의 자연법적 근거, 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국제법과 국내법 및 관습법의 존재 등이 반드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국제인권규약 제15조 제2호 역시 바로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 "행위 당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재판과 처벌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원칙이라고 행위 당시 명문의 처벌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13) 이에 관해서는 줄고, 「일본 범죄 처벌, 지금도 가능한가」, 「역사비평」 1993년 가을호, 207쪽 이하 참조.

14) 예컨대 바씨우니라는 교수는 공소시효를 법정형의 최장기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범인이 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있거나 추적받고 있는 상태라면 공소시효를 말만시켜야 할 근거를 끊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1968년의 유엔 시효부적용협약이나 1974년의 유럽협약이 사실상 많은 나라의 비준을 받지 못한 장애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살인죄등 법정형이 무기 이상인 경우 공소시효는 영원히 말소 되지 않는 다.

3. '불처벌'의 지역적 현상

(1) 남미지역

남미지역은 가장 악명 높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그만큼 '불처벌'의 문제도 심각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이 지역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특히 1960년은 군사독재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전환점이었다. '더러운 전쟁(인권운동가와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납치, 고문, 살해, 강간 등의 범죄행동을 말한다)'으로 상징되는 참혹한 인권침해의 재앙이 이 지역 위를 감싸기 시작했다. 이 해에 있었던 쿠바 혁명은 당시 권력에 있던 자들에게 강권통치의 명분을 주었다. 여기에 미국이 반개릴라전 훈련과 기술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책의 문제로서 종래 존재하지 않았던 중대한 인권침해가 하나의 패턴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미지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중대한 인권침해'는 역시 실종이다.¹⁵⁾ 거의 대부분의 남미국가에서 발견되는 실종사건은 정작 불법연행, 감금, 고문 그리고 살해라는 등식을 상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대량의 실종사건들의 유족들은 아직도 사라진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남미의 중대한 인권침해는 군부독재에 반대하여 일어선 반란군들의 존재에 의하여 다시 정당화되고 악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붕괴되기 시작한 남미의 군사정권은 대체로 자신의 과거 범죄를 은폐하고 소추를 방지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조치를 취한 다음 민간정부에 권력을 이양했다. 사면법, 새로운 민간지도자와의 협력, 증거 인멸, 군부의 영향력을 잔존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어느 국가에서도 과거 청산, 중대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성공하지 못했다.

15) 공식적인 처형보다 실종과 암살의 방식이 남미에서 선호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사형선고를 통한 공개재판이나 영웅을 만들 가능성성이 없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을 제거해버릴 수 있었다. 둘째,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인사까지 두려움에 떨게 함으로써 공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셋째, 이 방식은 반대파나 외국의 인권 단체들로 하여금 석방이나 공개 재판의 입장을 받을 가능성이 자체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다.

1) 아르헨티나

① 군사독재의 붕괴와 비뇨네 과도정권 :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 아래 여섯번의 쿠데타를 경험할 정도로 국도의 불안정한 군사정권의 지배하에 있었다. 원래 1950년대 초반까지 아르헨티나는 유럽과 비견될 정도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이 나라에 몰아닥친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은 연이은 쿠데타와 그 군사정부 아래에서의 지독한 인권침해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 패배의 후유증으로 레오폴드 갈티에리 장군이 1982년 6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사임한다. 새로이 임명된 레이날도 비뇨네 대통령은 민간정부로 이행하는 18개월의 과도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군부는 종전 군부지도자들의 패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과거의 '더러운 전쟁'에 대해서는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전쟁'에 대한 '공동의 죄'의식이 이러한 일치를 가져왔다. 당초 군부는 새로운 정부로부터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온존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으나 '5월광장의 어머니회'와 같은 시민운동이 확산되자 선거를 약속하고 새로운 알폰신 대통령에게 운명을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처벌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 논리는 '국가안보'라는 '전가의 보도'였다. 레이날도 비뇨네 대통령은 그 과도기간 동안에 인권침해에 대한 군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첫째, 1983년 4월 28일 '전복행위와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전쟁에 관한 최종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 과도한 권력행사가 일어났던 점은 인정했으나 군대의 모든 행동은 직무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또한 망명 또는 은신하지 않은 모든 실종자들은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망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선언했다. 둘째, 같은 해 9월 22일 군사정부는 이른바 '국가적 화해의 법률'이라고 불리었던 법률 제22,924호를 공포했다. 1973년 5월 25일(정치적 범죄에 관하여 마지막 사면이 있었던 날)로부터 1982년 6월 17일(갈티에리 장군의 사임 일자) 사이에 벌어졌던 정치적 동기와 목적에 의하여, 군부 또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의하여 저질러

진, 모든 형사적 범죄에 사면을 가한 것이었다. 셋째, 정부는 여러 종류의 비공개적 훈령과 명령을 내려 군사정부의 탄압정책과 관련된 문서의 파괴를 시도했다. 특히 비뇨네 대통령은 1983년 정권이양을 목전에 두고 불법구금자에 대한 문서의 파괴를 비밀리에 명했고, 연방경찰은 '반란진압작전'에 관련된 문서를 모두 소각했다.

② 알폰신 민간정부의 성립과 인권정책 : 1983년 선출된 알폰신 대통령은 군사 정권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양하기 몇 주 전 스스로 자신들을 위하여 선포한 사면령을 무효화시켰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실종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명했으며 과거의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고위 군사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시도했다. 시민들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이 알폰신 대통령 본인이 예정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과거청산'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1984년과 1985년에 걸쳐 군부지도자들이 이른바 '더러운 전쟁' 시기에 수행했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된 경제회복의 난조, 무장반란 등은 군부의 재등장 우려를 평계삼아 과거의 인권침해 범죄자를 처벌의 손아귀로부터 도망케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알폰신은 소환권과 기소권을 갖는 의회 차원의 위원회 설치 요구를 거부하고 그 대신 대통령 자신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것이 이른바 전국실종자위원회(CONADEP)이다. 자발적인 증언에 의존했을 뿐 이 위원회는 소환권이 없었기 때문에 군부의 협의자들을 조사할 수가 없었다.¹⁶⁾

한편 반동의 분위기는 의회로 하여금 기소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푼토 파날(Punto Final)'법이라고 불리었던 이 법은, 일정한 시한 이후에는 더이상 기소할 수 없도록 처벌 시한을 설정했다. 그 당시까지 약 700명의 장교에 대하여 1,700건 가

16) 이러한 이유 때문에 '5월 광장의 어머니회' 같은 인권 단체들은 협조를 둘러싸고 고민하게 되었다. 위 어머니회는 1984년 이른바 '산타페' 회의에서 각자 위 전국위원회에 증언할 자유는 부여하되 조직적으로 관계하지는 않기로 결의하였다.

량의 사건이 기소되어 있었다. 많은 경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법으로써 이제 더이상 증거가 확보된 다수의 군인들 조차 기소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87년 알폰신 대통령은 군부와의 탐색으로 이른바 '직무준수법'을 만들어 명령에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중령 이하의 군인들이 직무상의 행동으로 저지른 범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면제하고 말았다. 이 법률은 30일 이내에 반대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고위 장교들에게 조차 무죄 추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하급 장병이 판단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거나 행위 당시 그 불법성을 알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문제되는 개인은 상관의 권위에 의하여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에 의하여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개별적인 사건들을 평가할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변호사들에 의하여 위헌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22일 대법원은 3대 2로 합헌을 선언했다. 반대했던 판사는 그 법률이 합법화 또는 정당화함이 없이 일정한 행동을 사면하려는 의회의 기도라고 보았고, 찬성 입장에 섰던 판사는 사면의 일반적 성격은 사면받는 사실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을 뿐 개인적 성격, 계급 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따라 당시 계류되어 있던 300명의 장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다.

③ 메넴의 등장과 '불처벌'의 확대 : 1989년 등장한 메넴은 더욱 노골적으로 과거의 범죄자들을 사면 면책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2명의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7명의 군부지도자들이 기소되었고¹⁷⁾ 18명이 기소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메넴 대통령은 이들을 대부분 사

17) 이들 군부지도자들은 살인, 불법구금, 강간 등의 711개 죄목으로 기소되어 1985년 12월 최종판결을 선고받았다. 최초의 군사정부의 비델라와 마세리는 종신형, 해군을 대표하여 3인자 노릇을 하였던 아고스티는 4년 6월의 실형, 두 번째 군사정부의 경우에는 비올라가 18년, 람브루쉬니가 8년형, 갈리에리를 포함한 세 번째 군사정부의 세 사람은 모두 무죄선고되었다. 이 선고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선고가 낭독되던 그 법정에서 끊겨난 '5월광장의 어머니회'의 어느 어머니는 "아르헨티나 국민에 대해 저질러진 가장 비극적이고 지독한 사기극"이라고 부르짖었다.

면해버렸다. 과거청산 작업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단지 두 사건만이 유죄로 결론이 났고 5명의 주요 범죄자들이 구금되었다. 아르헨티나를 탈출하여 미국으로 갔다가 송환된 카를로스 메이슨 장군도 그 경우 중의 하나였다. 유명한 장군들로서 인권침해범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비델라. 16년형을 선고받은 바울라 등이 모두 사면 명단에 있었다. 이들은 그 독재기간 동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행동했던 것뿐이었으며 자신들의 행동은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대한 사면은 자신들에 의하여 "국가적 평화의 성취에 큰 공헌"을 했다고 치하하는 철면피한 모습을 보였다.

2) 칠레 : 1978년 칠레의 군부정권은 스스로의 손으로 1973년 9월의 쿠데타와 1978년 3월 사이에 벌어진 각종 실종사건 등의 범죄에 관하여 자체 사면령을 발표했다. 1978년 3월 19일의 포고령 2,191호가 바로 그것이다. 1990년 3월 집권한 아일원 대통령은 이 사면령에 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칠레 대법원은 사면령이 단순히 형벌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조사권한까지 박탈한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실종자의 행방을 법원이 조사하는 것까지 봉쇄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사건이 그대로 끝날 수는 없었다.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1973년부터 아일원 대통령에게 정권을 인계한 1990년까지 16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인권유린사건들은 그냥 덮어 버리기에는 너무도 중대하고 심각했던 것이다. 이 사건들의 진상조사와 처벌을 둘러싸고 논쟁과 투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군정 하에서 실종되거나 학살당한 정치인, 시민 등 2천여 명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의 임명과 전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아일원 법안'을 둘러싸고 이에 반대하는 군부와 미온적임을 지적하는 인권단체 쌍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새로운 조사기관의 설치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 법안은 그 동안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의회의 속성, 피노체트의 존재로 말미암아 의회마저 위 사면령을 폐지하거나 위헌선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나온 대안이었다.

1990년 5월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의하여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심각한 인권

침해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사법적 기능이나 개인의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했고 다만 '배상의 공정한 조치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를 권고'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다. 이 위원회에 피해자, 가족, 인권단체들의 정보가 산더미처럼 접수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약 2천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1992년 1월 31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연금 또는 일시불의 손해 배상 지급, 추가적인 사건의 조사 등을 가능케 하는 법률 제19,123호가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법으로 위업무를 담당하는 배상과 화해를 위한 국가기구가 설치되었다. 1978년 사면령 이후에 발생한 사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도 칠레가 경험한 엄청난 규모의 인권침해사건을 재정리하고 응분의 대응을 하는 데는 전혀 미칠 수 없는 것이다.

3) 우루과이 : 1985년 민간정부가 들어서기까지 1973년부터 12년간의 군사독재는 우루과이 국민을 억울한 죽음과 고문, 실종 등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줄리오 마리오 상구네티 지도하의 새로운 민간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일반 법정에 인권침해 사건들을 제소하기 시작했다(2년 동안 약 180명의 군인과 경찰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6년 12월 군부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우루과이 의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재조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만 사면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에 모든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캠페인을 벌여나갔다. 이것은 우루과이 헌법이 25%의 국민이 국민투표를 요구하면 실시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한 것이었다. 전국적 캠페인을 위하여 국민투표운동 전국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가 내세운 주장의 요지는 분명했다. 과거의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만 희생자들이 법률적으로 배상받게 되고, 미래의 반복이 방지될 수 있으며, 진실을 안연후에야 국민들은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우루과이의 군사독재가 절정을 이루던 1981년에 탄생한 인권운동단체, '평화와 정의를 위한 봉사'의 창설자이며 예수이트 교단의 신부였던 루이스 페레즈 아구레의 이

야기이다.

페레즈 아구레 신부의 국민투표 찬성은 보복과는 다른 진실의 갈망에 근거해 있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한 사람을 알고 있었고, 몬테비데오의 길가에서 만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했다. 그와 함께 그는 "국가가 고문자를 그를 위하여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임을 지적했다. 어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문자를 용서한 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깊은 기독교적 신념으로부터 내심의 개인적인 결단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많은 내적 고민이 요구된다. 그것은 진정한 화해여야 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가 대신 그것을 해주겠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진실이 말해진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은 대부분의 고문자를 용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관용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국민의 압력에 굴복한 우루과이 정부는 마침내 국민투표 실시에 동의했다. 그 대신 정부는 사면법의 거부가 군부의 개입과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선전에 몰두했고, 이 위협과 공포에 놓이긴 국민은 58 대 42의 비율로 그 법안의 유지에 손을 들고 말았다. 이 국민투표 결과는 차후의 과거청산 요구운동을 무디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4) 파라과이 : 파라과이는 다른 남미지역보다 훨씬 늦게까지 완강한 군부독재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1954년에 집권한 스트뢰스너 장군은 34년 동안 이 나라의 절대적인 통치자로 군림했다. 그가 집권했을 때 이나라는 근 1백 년에 걸친 내우외환으로 피폐해져 있었다. 그는 집권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을 공산주의자나 테러리스트로 몰면서 그가 없는 파라과이는 무정부주의나 폭력의 악순환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경고했다. 그가 약속한 안정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가톨릭을 제외한 모든 기관, 단체들이 스트뢰스너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고문과 약식처형, 실종사건이 잇따른 것은 다른 남미의 군사정부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영원할 것 같은 독재 정치도 1989년 2월 3일, 로드리구에스 장군의 쿠데타에 의해 끝나고 민주적 이행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어떠한 과거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의 결정은 따르지 않았다. 당분간 그 범죄자들은 면책을 향유하게 되었다. 특히 스트뢰스너는 브라질에 망명 중이고 두아르테 베라 장군은 볼리비아 대사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여 개의 고문사건이 그 피해자 가족들에 의하여 제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 피고인들을 위해 맡고 있는 변호인들은 시간 지연작전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1960년대 내지 1970년대 일어났던 그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전 정부의 구성원이었던 이들은 1989년 그 정부 전복 이전에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인권침해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1993년에 벌어진 대통령선거는 이 문제에 관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스트뢰스너 장군 밑에서 장기독재를 이끌었던 폴로라도 당의 우모시 후보는 과거정권의 공무원과 군대의 득표를 위하여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푼토 피날'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말한다. "왜 과거를 괴는가? 나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고 더 낙관적인 미래를 보고자 한다"라고.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은 "스트뢰스너 독재의 도둑과 경찰이 저지른 절도, 사기, 고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기도"라고 비판한다. 어느 무소속 후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의는 행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파라과이는 아직 이 논쟁과 혼란 속에 있다.

5) 엘살바도르 :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사용되었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의 모델이 유엔의 중재자에 의하여 엘살바도르에서도 이용되었다.

1991년 4월 정부와 국가해방전선 사이에 이루어진 이른바 '멕시코 합의'는 '진실위원회'의 설치를 담고 있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을 1992년 1월 16일의 평화협정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전 미주인권재판소장이었던 토마스 부루겐달 교수를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유엔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 이 위원회는 로메로 대주교 암살사건을 포함하여

1980년 이래 일어났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얼마나 진실 발견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한 앞으로 이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6) 과테말라 : 1954년 개혁적인 민간정부가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너진 이후 과테말라도 다른 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군사독재의 온갖 폐해를 경험해왔다.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법률적 견제장치 없이 고문과 살해가 열병처럼 유행했던 것이다. 1985년 군부는 새로운 민간정부의 선출에 동의했고 크리스챤 민주당의 캐레조가 집권했다. 그러나 그는 군인들의 '불처벌'과 민주적 통치의 기초를 세운다는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약속과 함께 취임했다.

남미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과거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의 자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캐레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만 건의 약식처형과 실종사건이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여전히 군대의 지휘관으로 남았다. 캐레조는 인권침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일반 형사법원에 맡겨두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실종자들의 운명을 조사할 독립위원회 설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종전의 군사정권은 스스로를 사면하는 사면법을 제정해 두고 있어 법적 처벌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똑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을 가져왔다. 의회에서 임명된 인권 음부즈만¹⁸⁾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캐레조 집권 5년간 588명의 약식처형과 140명의 실종사건이 있었다.

1991년 1월 새로이 대통령이 된 세라노 엘리아스는 취임식에서 '법을 파괴한 사람은 예외없이 처벌될 것이다'라고 언명했다. 그것은 과거의 인권침해자들의 기소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길거리 어린이들의 살해에 가담한 경찰관 4명에 대한 기소 등이 이루어져 세라

노 정부의 군부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역시 취임 3개월 동안 180명의 약식처형, 46명의 실종, 암살사건 등은 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 충분한 것이었다.

7) 페루 : 페루 역시 심각한 인권의 고난을 겪었다. 특히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이른바 '빛나는 길' 등 반란군과의 전투과정에서, 그 위기를 악용한 정부에 의하여 수많은 유형의 인권침해가 있어왔다. 페루의 11년에 걸친 군부독재는 1980년 종막을 고하는 듯했다. 1979년 새로운 헌법은 자세한 인권보장, 다당제, 삼권분립 등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새로이 출범한 페르난도 벨라운데 정부는 군부에 대한 민간우위를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민간정부의 지도자들은 군부의 인권침해가 마치 불가피한 전쟁수행의 결과라는 것을 묵인했다. 그러나 이어 들어선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1985년 선거에서 50%의 지지율을 확보한 절정의 인기, 전임자의 인권정책에 대한 평소의 비판 등으로 인하여 인권의 획기적인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의 인기는 곧 시들해 졌고 인권상황의 본질적인 개선도 없었다.

'불처벌'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다음 두 가지 사건이 흥미롭다. 아르타자 사건에서 해병대 대위인 아르타자가 여러 건의 실종, 학살사건에 관련되어 민간재판소에 회부되자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납치되어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가족은 찾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그를 대리하여 그를 재판할 권한이 민간법정에 없다는 항변을 제기했고 민간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여 군사법정으로 이송했다. '유령재판'이었던 셈이다. 1986년 6월 리마와 칼라오에 소재한 3개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빛나는 길' 포로들이 공동으로 감옥 안의 시설과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여 난동을 피웠다. 이를 진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항복한 죄수들 수백 명조차 처형해버림으로써 문제가 확대되었다. 민간법정의 판사가 그 작전의 책임자인 조지 라비날을 기소했으나 군인들은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맞섰고 대법원이 이들의 편에 손을 들었다. 그 후 군사법원은 중요한 책임자들을 모두 제외하고 겨우 두 명을 기소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때로는 검찰이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방폐노릇을 하기도 했다. 경찰의 광범한 수사권과 사법부의 통제를 막음으로써 인권침해의 법적 수단이 되었던 '반테러리스트법'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1988년 상원에서 이른바 '베르날스 위원회'가 생겨나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설치되었다.

그 후에도 의회 내에 인권문제를 다루는 두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그 결과는 미미했다.

(2) 아프리카 지역

1) 식민세력의 잔혹행위와 그 불처벌 문제

노예무역으로 상징되는 아프리카 각국의 고통은 식민지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식민지 시대가 종료한 이후에도 그대로 남았다. 노예로서 북미, 유럽, 중남미에 끌려간 아프리카인은 그 '신세계'에서도 여전히 노예 또는 '하류계급'의 생활을 면하지 못했다. 현지에 남은 아프리카인들은 식민지 종주국의 침략과 인권유린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식민국들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식민지 종주국들은 아프리카인들을 상대로 강간, 압탈, 살해 등 온갖 종류의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원주민들의 독립운동이 강화되면서 제국주의의 열강은 이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의 강도를 더했다. 케냐 (1950년대), 알제리아 (1950-1960년대), 양골라·모잠비크·기니아 (1960-1970년대), 짐바브웨 (1960-1980년대), 나미비아 (1960년대-1989년) 등에서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예컨대 케냐에서는 수만 명이 1950년대에서 1963년 사이에 영국 반란진압군의 손에 살해되었다. 그러나 그 후 어느 서구 제국주의 열강도 그들의 식민지에서 저질렀던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배상한 바 없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전범들에 대하여 처벌의 원칙을 발전시켜온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며 모순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범죄성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사면하는 법령을 만들어 두기조차 했다. 예컨대 씨든 로데지아 영국 총독은 짐바브웨 독립 직전에 일반

사면령을 공포했다. 이 사면령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저항 행위와 함께 그것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 등의 행위를 한꺼번에 사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와 같은 식민지 시대의 가혹한 인권침해와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자손들은 공식적 사과,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992년 7월 다카르에서의 아프리카 통일기구 (OAU) 정상회담은 유럽이 과거 식민주의와 아프리카인의 노예화에 대해 배상하는 책임의 연구와 준비를 위해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기로 결의했다.¹⁹⁾ 특히 태평양연안의 작은 섬나라 나우르는 이미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자연자원의 식민지적 착취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요구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내놓고 있다.

2) 우간다 : 그후 독립된 아프리카 각국에서는 독버섯처럼 독재정권이 출현했다. 이들이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마침내 퇴조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대로이다. 여기서는 우선 아프리카에서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성공한 우간다의 경우를 본다. 이디 아민의 장기독재는 1986년 요웨리 무세베니의 권력장악으로 무너진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정권을 뒷받침하던 정권 안보 체제는 소멸하고 그대신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1962년 우간다 독립이래 1986년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모든 인권침해범죄에 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절차와 결과는 거의 매일 텔레비전에 방송되었고 가장 인기있는 시청률이 되었다. 1981년 음바라라(Mbarara) 지역에서 일어난 7명 실종사건의 명령 책임자로 지목된 크리스토퍼 라카시이시 전 장관이 1988년 6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밀턴 오보테 대통령 시절, 공포의 국가안전부 정치담당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7명의 살해를 실행했던 또 다른 국가안전부 요원이었던 엘리아스 와나마 역시 기소되었다. 차량사고로 위장발표된 성공회 대주교 자나니루우움에 대해서도 이디 아민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살해되었다는 증거들이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

18) '인권 음부즈만' 제도는 새로운 과테말라 정부에서 이루어낸 인권 발전의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몇 달마다 심각한 권리남용, 정치적 살해, 실종 사건들의 통계자료를 내놓기도 하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조사를 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지방출장을 통하여 인권보장 효과를 거두어왔다.

다. 그러나 위 위원회의 노력은 좌절을 겪기도 했다. 1987년 이웃나라들로 도망간 범죄자들의 송환에 실패했던 것이다. 탄자니아의 다르에 있는 치안재판소 판사는 존 찰스 오골레 중령을 송환해 달라는 우간다의 요청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루웨 레오 삼각주 지역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그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살해 목적의 납치 혐의를 받았던 정보 장교 피터 오윌리에 대한 송환 역시 케냐 고등법원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과거의 범죄를 조사, 소추, 처벌하는 데 부분적으로 실해하고 만 것은 교통편의 문제, 인력부족, 소급효 금지원칙 준수에 따른 법률적 장애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3) 기니아 : 1984년 4월 세쿠 투레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선 기니아의 경우에도 '불처벌'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새 정부는 전 정권의 어떠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를 꺼렸다. 의회 안에서의 반대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경찰관을 내무장관으로 임명할 정도였다.

4) 베니 : 베니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적 이행을 이루어낸 나라로 손꼽힌다. 1990년 2월 베니 의회는 맑스-레닌주의의 독재로부터 다원적인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을 결의했다. 전 정부는 정권이양의 불가피한 상황을 파악하고 사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과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예컨대 망명한 시민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사면법, 독립성이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위원회의 설치했고, 과거 정권에 의하여 축출된 군인들을 복직시키는 법령도 제정했다.

그러나 베니의 경우에도 일종의 사면법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예외는 아니었다. 1991년 4월 12일 면책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1972년 케레쿠 전 대통령이 1972년 짐Kevin 이후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감자 살해와 고문 등 여러 사건에 관련되어 있던 케레쿠 대통령의 면책은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1984년 사망한 한 수감자의 동료들이 고발한 진정에 따라 두명의 보안요원이 살인, 횡령,

고문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5) 말리 : 23년간이나 이 나라를 지배하던 무싸 트레 오레 대통령이 1991년 3월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전복되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규모의 시위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직후였다. 트라오레 대통령과 전 내무장관이 독직과 1991년의 시위대 학살 공모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았다.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바 '피의 범죄' 혐의는 다수의 전직 고위관리에 대한 소송의 흥수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군인들은 제외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트라오레 대통령을 전복하고 '국민 구제 과도위원회'로 이끈 뚜레 장군에 대하여 1992년 9월 면책을 주었다.

6) 콩고 : 1991년 2월에 열린 의회는 국가의 장래와 과거의 인권침해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쟁을 벌였다. 콩고에서는 1960년대 이후 1977년 브라자빌 주교를 포함하여 약 3천여명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 등 혹독한 인권침해가 잇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사소 느구에 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의회는 국민적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거의 모든 정치적 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하여 일반사면을 선포했다. 어떤 인권침해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안전위원회가 해소되고 혁명재판소가 폐지되며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다. 1992년의 정치적 혼란 이후에 들어선 새로운 지도자도 역시 일반사면을 확인했다. 사소 느구에 쏘 대통령이 재임했던 전 기간을 포함하여 면책을 주었던 것이다.

(3) 아시아지역

1) 아시아지역 '불기소' 문제의 특성

아시아지역에서도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한 광범한 '불처벌' 현상이 보편적으로 일어났다. 살인, 고문, 납치, 자의적 구금 등에 가담한 군인과 경찰이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 인권침해가 '불처벌'의 담보하에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폭압과 '불처벌'이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제도화의 명분과 근거는 '국가안보'이다.

이것 역시 이 지역에 강력하게 존재한 냉전과 긴장의 산물이다.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법률과 관행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적 제한, 보안경찰과 군인들의 면책이 보장된다. 인도의 경우 무장병력특권법 제 6조는 수권을 받은 장교, 영장 담당 장교, 기타 고위 군장교들의 민간인에 대한 행동의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면책법은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행한 법률적 또는 다른 행동" 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면책시키고 있다.

2) 타일랜드 : 1982년 절대군주제가 종말을 고한 이후 타일랜드는 17번 이상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했다. 특히 1976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무자비하게 진압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압의 핵심적인 책임자의 한 사람인 프라파스 장군은 은퇴하여 불교사원의 승려가 됨으로써 그 책임을 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타일랜드의 '불처벌' 경험은 1992년 5월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폭력적 진압자들에 대한 경우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것은 외신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비무장한 사람들을 향하여 타이의 보안군은 발포하여 최소한 52명을 살해하고 수백 명을 구속했다. 이때 연행된 수백 명의 행방과 운명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며칠 후 타이 수상은 사임하고 말았지만 사임 직전 그 자신을 포함한 군부지도자들을 사면하는 칙령을 선포했다.

새로이 구성된 의회는 그 칙령을 무효라고 선언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선언을 불소급이라고 판결하여 결국 그 칙령은 유효하게 되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사건 당시의 수상을 비롯한 군부지도자들을 고발했으나 타이의 경찰은 무혐의 처리하고 말았다.

3) 필리핀 : 마르코스 지배하 필리핀의 인권탄압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만큼 이 나라의 민주화와 그 한계는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972년에 내려진 필리핀의 계엄령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전통을 한방에 산산조각내고 말았다. 그 이후

대규모로 이루어진 일상의 인권유린은 필리핀을 국제인권단체 사이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권오명국의 하나로 올려놓았던 것이다. 민간인의 살해, 고문, 실종 등 권력에 의한 정치적 폭력은 필리핀의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일상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1987년 2월의 평화적인 혁명은 탄압과 빙곤, 부패와 외세의 지배로부터 이 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새벽의 약속'으로 비쳐졌다. 실제로 집권 초기에 아키노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제정, 대통령 직속 인권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인권교육, 공산당 및 신인민군(NPA)지도자를 포함한 정치범 석방 등으로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198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아키노 행정부의 인권정책의 방향과 해석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깨어졌다. 반란에 대한 '전면적'정책과 '민간자위적봉사자조직'이 민간인을 무장하여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으로 광범하게 인권침해를 야기했던 것이다. 수많은 종교인, 인권운동가, 시민들이 백주 대낮에 살해되기 일쑤였으며 고문과 정치적 구속자가 늘어났다. 1989년 한 해 동안 312건의 고문, 141건의 악식처형, 43건의 실종사건 그리고 2천 명이 넘는 정치적 구속이 이루어졌다. 군부의 포로가 된 민간정부의 한계로서 필리핀 사례는 인용될 만하다.

이같은 인권침해의 재발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관용, '불처벌'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그 과정을 살펴보자. 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필리핀에서는 가장 존경받았던 인권변호사 호세 디오크노가 그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 활동에 기대를 모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과거와 현재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972년 이후의 계엄령시대에까지 15년을 소급하여 그동안 있었던 인권침해범죄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활동은 조만간 난관에 봉착했다. 수많은 고발이 잇따랐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정과 인원 지원 없이 7명의 위원들이 그 사건을 처리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 위원들은 모두 중복된 다른 업무를 맡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가로

막았던 근본원인은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데 대한 군부의 강력한 저항에 있었다. 디오크노 위원장은 1981년경 고문 끝에 사망한 인권운동가 바비 드 라 파즈를 비롯한 여러 사건에 관련되어 악명이 높았던 롤란도 아바딜라를 지목하여 이 한사람이라도 상징적으로 조사, 기소 하려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디오크노는 암으로 사망했고, 1986년 말경 인권위원회의 활동은 거의 정지되고 밀었다. 1987년 대통령궁 앞에서 있었던 농민시위 진압과정에서 17명의 시위대원이 사망했고, 이에 1명을 제외한 전위원들이 사임함으로써 인권위원회 설치조항이 있었으나 이것은 이미 행정부 내의 한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군부는 신인민군의 '만행'을 이 위원회에 고의적으로 대량 제소함으로써 이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

군인들을 수사, 기소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었다. 군부 자체의 수사의지 결핍과,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협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포고 1,850호는 군인의 범죄를 모두 군사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어 이것이야 말로 인권침해에 가담한 군인들의 처벌을 불가능케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공식적인 군인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민간 무장병력의 경우 민간법정에서 얼마든지 재판이 가능했음에도 전혀 기소된 바가 없었다. 이것은 결국 필리핀 정부의 인권침해범죄 처벌 의지의 실종을 확인케 한다.

이러한 정부의 무성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은 새로이 일어나는 살해, 살인사건에 매달려 과거 범죄자의 처벌에 관심을 쏟을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사이 과거의 인권침해 범죄자들은 '화려한 변신'을 시도했다. 마르코스 치하 최대의 악명을 날리던 롤란도 아바딜라는 일로코스 노르테주의 부지사가 되었으며, 다바오 경찰청에서 고문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경찰관 한 명은 마닐라 경찰청으로 영전하기도 했다. 과거의 인권침해 불처벌이 가져온 결과, 필리핀에서 새로운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대로이다. 필리핀에서 '불처벌'의 가장 최근 사례로서는 안드레스 프리지날 사건이 꼽힌다. 그는 1992년 3월 6일 보안군에 의하여 체포된 후 행방불명 되었다. 8개월 동안 가족들과 변호인이 그의 소재를 찾아나섰으나 군부대는 그의

연행과 구금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가족들은 영장에 대한 이의를 고등법원에 제기했으나 증거부족으로 기각 되기도 했다. 지칠 줄 모르는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의 활동으로 프리지날은 군대의 '안전가옥'에 구금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 가해자들의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필리핀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방글라데시 :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은 1백만에서 3백만 명에 이르는 방글라데시인의 죽음을 가져왔다. 독립 후 다수당이 된 아와미 리그는 전범과 그 부역자를 재판할 것을 다짐했다. 1972년 3월 현재 약 3만명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그 가운데 단지 2,850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시작되었다. 1973년 11월에는 이들에 대한 일반사면이 선포되었다.

1975년 무지바르 라흐만 대통령과 40여 명의 추종자들이 군대가 동원한 탱크에 의하여 암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은 책임있는 장교들을 사면했고 이 결정은 새로운 수정헌법에도 명기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민들의 시위와 봉기 끝에 장교들은 리비아로 망명했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에르샤드 장군이 이끄는 군사정권이 이 나라를 지배하였다. 에르샤드 장군이 1990년 12월 사임한 직후 구정권하의 잘못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1991년 3월 그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무기소지,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혐의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1991년에는 또한 초대 대통령의 암살자에게 혜택을 주는 헌법상의 면책을 제거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5) 네팔 : 네팔은 정당 없는 왕정이 30여 년간 지배해왔다. 그러나 1990년 4월 네팔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을 위한 투쟁이 공산주의자 그룹과 또 다른 정치집단, 인권단체, 기타 사회단체들이 모인 '범좌파 전선', 네팔의회당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비렌드라 네팔 왕이 다당제 수용, 총선 실시 등에 동의했던 것이다.

이 투쟁과정에서 1990년 4월 6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카투만두 시민들을 향하여 경찰이 무자비하게 사살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국왕의 동의는 바로 그같은 학살 위에 벌어졌던 것이다.

새로 수립된 과도정권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왕정 하에서 일어난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두 위원회가 성립되었다. 하나는 30여 년간 이루어진 실종사건을 조사하는 '실종위원회'였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1990년 2월에서 4월까지)에서 일어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조사할 이른바 '말리크 위원회'였다. '실종위원회'는 1985년 6월에 일어난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연행되어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자료요청, 인터뷰 등의 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까지 냈으나, 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한편 '말리크 위원회'는 비공식적인 보고서에서 위 기간중에 45명이 사망하고 2,3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어떤 법률이 적용 가능한지 특정되지 않았고, 또한 발표에 가담한 경찰을 개별적으로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보고서에 따른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위원회들의 조사활동과 정부의 입장 때문에 자의적 구금, 고문 등이 재발하기 시작했다.

(4) 동구권지역

소련 붕괴와 함께 다른 동구권지역 국가들도 과거 공산정권의 물락을 목도했다. 공산정권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졌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관한 처벌 요구와 재평가의 움직임이 터져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때로는 이것이 지나쳐 많은 나라에서 전 공산당원들에 대한 일종의 '메카니즘'선풍이 휙몰아쳤고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이 되살아났다는 비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법률에 의하여 집행된 행위를 모두 범죄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도 인권침해범죄가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처단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상징적인 몇 사건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특히 구소련의 경우 스탈린 치하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시베리아 추방, 1930년대와 1940년대의 해아릴 수 없는 사람의 불법 처형, 타타르족, 불가 독일계 민족의 강제추방 등에 관하여 스탈린 사후 1950년대 비밀경찰의 책임자 베리아를 비롯한 100여 명의 처벌이 있었지만 나머지 중요한 관여자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이들은 그 이후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남아 계속 인권침해범죄에 개입해왔다. 그 이후 지속된 정신병동의 남용, 정치적 반대자의 불법적 구금 등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구소련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커다란 기능을 했던 KGB를 비롯한 보안기관들 역시 개혁의 수술대에 올라갔으나 그 근간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폴란드에서는 얀 올체프스키가 수상이 선출됨으로써 공산당 간부들과 비밀경찰요원들은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인권변호사로서 1980년대에 벌어졌던 의문의 사건들²⁰⁾에서 변호인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위 사건들이 알려짐에 따라 두 명의 비밀경찰 장군들이 구금되었고 의문의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이 장군들은 내무부 조직 내에 범죄조직을 설치, 운영한 것 외에도 5가지의 죄목으로 재판받았다. 그외에도 공산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몇 건의 정치적 암살, 고문 등과 같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조사와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었다.

불가리아에서도 몇 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불가리아 국가원수 겸 공산당수 토도르 히브코프, 전 수상 아타나소프, 전 기획부장관이었던 옵챠로프가 각각 7, 10, 9년형을 선고받았다. 히브코프에 대해서는 터키계 불가리아 시민들의 인권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집단적인 범죄로서 개인적 책임을 확정짓기 어려워 더

20) 이 가운데 솔리데리티 운동의 지원자였던 예르지 포피엘루츠키(Jerzy Popieluszko) 신부의 암살사건이 유명하다. 이 신부는 7년 전 비밀경찰에 의해 암살되었으나 계속 의문과 은폐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올체프스키는 이 사건에서도 위 신부 기록의 변호인이었다.

이상 기소되지 않았다.

헝가리에서는 1991년, 1944년 12월 21일부터 1990년 5월 2일까지 사이에 벌어진 심각한 범죄로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처벌되지 못했던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받았고, 다만 1956년의 헝가리 사태 진압과 후속 탄압조치가 전쟁범죄로 선포되고, 이에 관한 소급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위헌판결 직후 대통령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대신 "과거의 탐색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진실에 대한 추적을 증진하고 개인의 책임을 확고히 해줄, 역사위원회의 설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제안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고 시효에 관한 논쟁도 끝나고 말았다.

루마니아의 국가원수 차우세스쿠에 대한 기소와 처형은 전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그는 1989년 12월 25일 사형선고를 받고 당일로 처형되었던 것이다. 혐의는 널리 알려진 대로 6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제노사이드 범죄, 국민과 국가에 대항하여 무장행동을 조직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 등이었다. 9개월 후 그의 아들 니쿠는 군사법정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외에도 차우세스쿠와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위원회의 부위원장, 내부장관, 제1부수상, 루마니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등이 역시 제노사이드 혐의로 기소되어 1,200명 이상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는 보안군 사령관이었던 블라드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외에도 약 1,700 건의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91년 10월 초순경 옛 공산당 간부와 인민군 장교 그리고 비밀경찰요원 및 협력업자가 행정부나 국영 언론기관, 대학, 국영사업체 등에 앞으로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89년 12월 그 직전에 있었던 시위사건의 진압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의회에 설치된 위원회로부터 기원한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여 30여 명의 경찰이 기소되고 그 중 몇 명은 1990년 봄 4년의 징역형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다. 당초의 위원회는 1990년 6월의 새로운 선거 결과 재조직되고 내무부 문서에 접근하여

그 조사범위를 과거의 고급 정치관리등의 행적에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의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행정부와 군대, 사법부 내의 정책결정 부서의 직책 담당자는 이 법에 따라 국가보안기관과의 협력이 없었음을 서약해야 했다. 한편 1968년의 이른바 '프라하의 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1992년 2월 내무장관에 의하여 수행된 조사결과가 공개되어 반역죄로 기소되었다. 구스타프 후사크에 대한 심리가 열렸으나 그는 석방되어 1991년 11월 사망하고 말았다. 나머지 8명의 피고인들도 시효만료의 이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평화의 보호에 관한 1950년대로부터의 법률이 이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부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인권침해범죄에 관한 상당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동독을 탈출하는 시민을 쏜 경비병, 선거결과를 조작한 관리들도 들어있다. 동독 국가원수이며 공산당 당수였던 에르리히 호네커와 국가보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재판도 열렸다. 이들에 대한 혐의의 주된 내용은 바로 위 경비병에 대한 사격 명령을 내린 데 있다. 정보기구(슈타지) 책임자였던 마일케는 1923년에 있었던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었었다. 그는 동독에서의 많은 인권유린사건에 관련성을 의심받았지만, 증거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오래 전에 있었던 살인사건과 그 당시 수집되어 있던 충분한 증거로 기소당한 것이다. 위의 경비병에 대한 재판에서와 같이 동독의 국경법이 무효로 된 경우와 달리 동독의 법률을 유효하게 인정하여 그에 위반한 행위가 처벌된 사례들도 있다. 예컨대 1989년 10월 7일의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시민을 상해한 경찰관이 처벌받았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건들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독정권에서 벌어졌던 광범한 인권침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호네커를 비롯한 당 간부들에 대한 재판진행의 중단, 극소수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 경비병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들은 희생자 가족들로 하여금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내게 했다. 다음은 독일의 유력지 [디 벨트]와 프랑스의 [리베라시옹]지가 동독을 탈출하려던 시민에게 발포한 경비병에게 3년 6개월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반응과 견해를 실은

글이다.

[디 벨트] 호네커에 의하여 부과된 동독 장벽의 월경자에 대한 사격명령의 피해자인 크리스 구에프로이는 그녀의 아들을 죽인 경비병에 대한 판결에 대해 몹시 불만이다. 그녀의 실망은 그 경비병들이 선고받은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가 제기한 문제는 왜 우리의 사법이 권력에 있었던 '살인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가하는 것이다. 끝 수상이 최근 칠레를 방문했을 때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일어난 범죄의 책임자들이 기소되어야 하며 희망자들은 정의의 힘을 행사하는 즐거움을 맛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에서는 왜 더욱 강력하게 그런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가? 구에프로이 여사는 국가를 비판하는 용기있는 자세를 취했다. 이제야말로 기소자들을 동정하기보다는 그들에 의한 희생자를 배려할 때이다. 호네커의 명령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리베라시옹] 재판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베를린 장벽을 지킨 동독 경비병들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 지난 1989년 털주하던 크리스 구에프로이를 사실했던 잉고 하인리히는 3년 6개월, 안드레아스 쿠렌피스트는 2년간의 집행유예,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 테오도르 자이델은 "동독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털주자에 대한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단순히 '긴 연결고리 가운데 밀단에 서 있음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은' 유죄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독일의 사법제도를 암묵적으로 시사했다.

4. 결론 : 화해와 미래로 향하여 열리는 길

이상에서 우리는 불의에 대한 심판과 범죄에 대한 응징이 부분적으로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의실현의 더 많은 실패와 범죄자의 효과적인 면책, 죄없는 다수 희생자의 계속되는 고통을 점검했다. 이 상황은 얼마나 인류에게 모독적인 것인가.

'불처벌'을 인정하는 것은 맹겔레나 바르비가 누구도 그들을 수색하거나 고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과 함께 자유방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국가가 중심이 된

테러리즘은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법률은 그들을 결코 접촉할 수 없게 되고 정의는 영원히 조롱당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는 것과는 다르다. 의도적인 망각은 악함의 징표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의 신호이다. 과거의 야만스러운 범죄를 망각속으로 쓸어넣고자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미래로 향한 길에 방해를 놓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회는 그러한 범죄들의 도피할 수 있는 현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범죄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의 조건들을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인권 침해범죄의 '처벌'문제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청산이라는 측면 그 자체보다 미래에 동일한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의 확고한 다짐을 이룩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침해 범죄자 처벌은 과거의 일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인권이 내포하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과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정의가 구체적 역사 속에서 행해진다는 확신과 교훈을 심어주게 마련이다.

이 글에서 확인한 정의와 인도의 실패는 바로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요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은 개선되고 있고 한계는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정의가 확보되고, 인도적 정신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전진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정의를 향한 싸움'의 길에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의문사 해결을 위해

김학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I. 서론

우리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은

동지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라네.

보아라, 이렇게 짓이거진 나의 얼굴을
누가 나의 죽음을 말해 줄 것인가. 누가 나의 동지인가.
나의 눈을 찾아 다오 나의 입을 찾아 다오
나의 머리를 찾아 다오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는 동지들이 그리웠다.
죽더라도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들어줄 동지들이 그리웠다.
마지막 날 밤을 동지여 잊지 말아 다오

누가 내 죽음에서 눈을 둘리는가.
그대 내 모습이 끔찍한가.
그대의 사랑이었던 내가, 그대의 희망이었던 내가
이리 죽었다네.
한 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놈들에게 당하고 말았다네.
그대여, 내 죽음을 기억해 다오

내 원한을 풀어 줄 사람은 그대뿐일세.

한마디 쟁고하네 만
내 죽음을 외면하기만 한다면
언제 놈들이 그대의 가족들,
심지어는 자네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일세.
이 말 한 마디만 명심하게!

참으로 한 많은 세월이 흘렀다.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동료를 잃고, 거리로, 군부대로, 국회로, 바닷가 해변으로 실성한 사람 마냥 그렇게 떠돌았다.

그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 관련자들을 찾아다니고,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법정에 호소도 해보았고, 각 정당과 관계기관에 찾아다니기도 하였고, 10만명 서명을 받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기도 하였고, 이를 국회에 청원하기고 하였다. 그리고 1998년부터는 서집회와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8년부터는 서울역 광장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대국민캠페인²⁾을 하면서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 국방부에 항의

1)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열사회보, (1998. 5), 6-7쪽

2) 1998년 4월 24일부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족민주유기족협의회 주관으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와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캠페인'을 5월 말까지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6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방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 4일부터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의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출지에 당한 일로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체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자살³⁾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었다. 동료들과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에 대해 엄청난 불신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승리가 아닌 불의와 거짓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제라도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극과 한을 새 천년까지 안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도래하는 새 천년도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정의가 아닌 불의로, 화합이 아닌 분열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결단하여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를."

1. 의문사(疑問死)의 정의

의문사(疑問死)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인 자체의 요인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외부의 작용⁵⁾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은 것을 말하며, 외부의 요인이 밝혀졌다 하여도 그 목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경우⁶⁾를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이 티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매주 금요일 서울역 광장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3) 이이동의 아버지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악을 마시고 음독 자살하였고, 최우혁의 어머니는 양화대교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4) 노쇠, 질병, 자살 등의 범주가 이에 해당하나 질병에 의한 경우라도 그 질병을 가져오게 된 경위가 살해를 목적으로 한 외부의 요인일 경우에는 의문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5) 대개의 경우 살인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사고사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6)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라도 살해의 목적으로 사고를 위장한 경우나, 백범 살해범인 안두희가 단독 범행이라 주장하나 그 배후 및 살해 동기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

것이라 한다. 수많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그 제단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특히 타인에 의해 향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면 살 수 있는 길이 보였을 때, 그 공포와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자신의 사상과 조직, 그리고 동지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같이 가해자가 은폐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보다 몇 배의 고통이 있었으리라."⁷⁾

2. 국가공권력이 개입한 의문사

의문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죽음이 발생했을 때 죽음에 따른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의문사에 포함되는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밝혀져 자연사, 병사, 중독사, 파로사, 사고사, 자살, 타살 등으로 원인에 분류된다. 그러나 이처럼 분류되지 않고 의문사로 남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죽음에 이를 하등의 이유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망 전에 국가공권력⁸⁾ 등의 개입이 역력한 경우에는 그 죽음을 발표된 사인 그대로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료 및 국민들은 가해자가 범죄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하였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장과 은폐는 일반인에 의해 자행된 경우보다 국가공권력이 개입된 사건에서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조직적이다.⁹⁾

모든 의문사의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하나 하나의 사건 해결을

7)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취지 종에서 (1998)

8)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 공권력의 대표적인 기관은 국정원(안기부, 중앙정보부), 보안수사대(치안본부 대공분실, 일반 경찰 포함), 기무사(보안사, 특무부대, 일반 군대 포함)를 말한다.

9) 박종철 고문사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책상을 턱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발 표를 치안본부에서 하였고 고문에 의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관련자들과 그 범죄 행위들을 축소, 은폐하려는 국가공권력의 조직적인 행위들이 계속되었다.

위해서 국가권력이 다 동원되어서라도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 개개인의 생명권을 지켜 주는 것이 바로 국가권력의 일차적 의무이며, 그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해결하지 않는 정부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그 많은 의문사 중에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여 죽음에 이른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민주인사들의 의문사를 중심으로 하여 다루고자 한다.

II. 의문사 발생 배경

정치적 의문사의 본질은 국가 테러리즘이다.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첫 째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데 있으며, 세 번째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테러리즘에 기인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박종철 치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의문의 죽음이 진상 규명되지 않은 채 영구미제 사건으로 묻혀 버렸기 때문에 의문의 죽음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각각이 서로 다른 체제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의 사상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즉 지배 권력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해 왔으며, 그 탄압의 본질이 바로 국가 테러리즘이 것이다. 이는 섬멸적인 제국주의 양태와 폭압적인 군사 독재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집단에 대해서나 개인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양태는 일제시대 때부터 자행되어 온 치안유지법과 같은 사상전향 제도가 깃질을 바꿔 가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해방 이후 미군정이 자행한 고문 기술이 보태졌고 이후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이 같은 테러는 국가공권력 외에도 기업이나 사학재단 등

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자행되어졌다. 즉,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거나 구사대,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간부, 학생회 간부, 노점상, 철거민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해 온 것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는 말이 사회 저변에 만연화되어 있음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III. 국가테러리즘으로서의 의문사 유형

1. 암살의 결과로서의 의문사

일제치하에서는 전쟁의 한 수단으로 적국 고위 간부들에 대한 암살이 이루어졌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등이 다 우리 민족을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키는 하나의 투쟁으로 이토오 히로부미 등 일제 고위 관료들을 폭탄 투척 등의 방식으로 살해하였다. 이 분들은 그 현장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 일제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당시 적장들에 대한 암살은 자신의 목숨과 비꾸는 숭고한 투쟁이었다.

이와는 달리 해방 이후에는 국가권력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적 제거의 목적으로 암살 당했다. 45년 12월 고하 송진우 선생의 암살, 47년 7월 봉양 여운형 선생의 암살, 47년 12월 설산 장덕수 선생의 암살, 49년 6월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서 해방 이후에 자행되었던 암살의 형태를 알게 해주는, 밝혀진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1949년 반민특위 위원들에 대한 암살 음모 사건이 발각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가 개입한 여타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정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거하려 하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려 했으며, 어떻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다.

1949년 1월 25일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경찰국 수사과장이었던 최난수, 수사과차장 홍택희, 그리고 노덕술, 박경립 등 4명이 1948년도 국회에서 제정한 반민법 시행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비밀리에 작당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들은 중국태생 백민태와 함께 1948년 11월 중

순경 백의 일파로 하여금 국회에서 반민법 실시에 관하여 제안 연설을 한 김용진 의원 등 3명을 강제로 납치하여 '나는 이남에서 국회의원 노릇 하는 것보다는 이북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성명서 3통을 자필로 작성하여 한 통은 대통령에게, 한 통은 국회에,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각 신문에 발표하게 하고, 38선에서 전기 3의원을 살해한 다음에 애국청년이 그들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 선전할 음모를 꾸몄다."¹⁰⁾

이처럼 권력이 개입한 정적에 대한 암살은 살해당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더라도 그 본질적 부도덕성으로 인해 배후를 철저히 은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의문사로 70년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박정권이 장준하 선생을 살해한 뒤 실족사로 은폐시킨¹¹⁾ 경우와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은 없지만 김형욱 사건¹²⁾ 등이 있다.

2. 고문 과정에서의 의문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에서 집

10) 김우종, "반민자"가 잡아먹은 반민특위, 무크/전일문제연구3, 나남출판 (1995), 270-271쪽

11) 항일 독립운동을 했으며 오랜 민주화투쟁과 통일운동으로 재야 대통령이라는 칭송까지 들은 민족의 지도자 장준하 선생은 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구축해 갈 때 반유신의 선봉에서 서서 민주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74년 1월에는 민주화복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74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에도 지속적인 유신헌법 철폐를 목적으로 한 개헌운동을 광범위하게 꾸려나갔다. 그러던 75년 8월 17일 선생이 약사봉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박정희 정권은 등산을 하다가 실족, 추락사한 것으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었다.

장준하 선생은 최고위층의 지시를 받은 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육군 특무부대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12) '10대의혹사건 8. 김형욱살인', 중정 암살팀 10여명 고강도 훈련, 한겨레, 98.08.13자

…중정 감찰실장을 자진 방준모(72·미국 뉴저지 거주)씨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81년 여름 중정에 근무하던 서이무개씨가 "79년 여름 김재규에 의해 김형욱 암살오원들의 훈련조장으로 임명된 특수부대 출신 등 10여명을 데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훈련중지가 떨어져 물어 보니까 상황 끝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송진석(49·전 안산시장)씨는 YM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수감된 서대문 구치소에서 박정희 암살 사건으로 들어와 있던 박선호 중정 의전과장으로부터 '중정 특수공작단에서 김형욱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 "배신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박정희의 성격에 미루어 볼 때 차지철의 소행일 가능성성이 더 높다"며 "당시 차지철은 산하에 정보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한 42건의 의문의 죽음을 중 이 범주에 속하는 사건들이 가장 많은데, 처음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지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국가공권력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도록 고문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자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 은폐시킨 경우들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처음에는 의문사였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진 박종철 치사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이 반공법 위반 정치수들에 대한 사상 전향 과정에서 고문, 폭력으로 살해한 뒤 병사 처리한 수많은 장기 수들의 경우¹³⁾가 그러하고, 73년에 발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¹⁴⁾, 80년 보안사에 끌려 간 임기윤 목사 사건¹⁵⁾, 전두환 정권이 학생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81년부터 84년까지 자행한 강제징집¹⁶⁾ 시킨 학생들에 대

13) 권오현, '육중희생자 문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 자료집 자료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1997), 107-117p, 142-148p

14) 중앙정보부는 73년 10월 25일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명단에는 73년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교수 최종길 선생도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해명은 최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 후 국내 간첩조직망에 대한 여죄를 조사 받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변소에 가 투신자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간첩단 조직을 꾸미고 있었고, 중앙정보부의 연락을 받고 최씨가 출두하기 이전 동베를린을 거쳐 평양에 다녀온 것으로 사건 조사가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투신했다는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검을 원망한 속에서 유가족을 협박해 장례를 급히 치르게 만든 점 등을 고문에 의한 탄상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으로 간주된다.

15) 임기윤 목사는 1980년 7월 19일 국군보안사령부 부산분실 참고인으로 불려간 뒤 3일 만인 21일 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6일 순교하였다. 보안사 안에서의 3일 동안 어떠한 일이 임기윤 목사에게 있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보안사측에서는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고혈압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혈압이 80-150으로 체구에 비해 볼 때 그렇게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혈압으로 인한 이상도 없었다. 게다가 미망인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뒷머리 원쪽이 3센티 가량 찢어져 있고 그 곳에 피가 흘러 말라붙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 통통 삼일공사라 불리는 보안사에 연행되었던 사람들은 그 곳 지하실에서 20대 청년들에 의해 폭행이 헌히 행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임기윤 목사는 보안사 내에서의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운명하였거나 살혹 육체적 고통은 당하지 않았더라도 죽음을 이를 정도의 공포 분위기에서 정신적 고문으로 운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16) '강제징집 당해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 자료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1997), 175-209p

강제징집이란 시위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대군에게 뚜렷한 힘의 사살도 없이 문제학생으로 지목 당한 학생, 노동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야학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병무청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신체검사 통지서의 20일전 송달 및 임영장의 30일전 송달을 무시당한 채 경찰서에서 곧바로 군부대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 녹화사업¹⁷⁾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정성희¹⁸⁾, 김두 향¹⁹⁾, 이윤성²⁰⁾, 한영현²¹⁾, 최은순²²⁾, 한화철²³⁾ 사건들

88·89년 국회 5공특위 때 국방부에서 당시 평민당 조승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2년 11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학생운동을 하던 447명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징집 하였다. 이 중에는 소아마비 환자 등 장애자와 3대 독자 등 징집 면제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17) 위 학술회의 자료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제정집자 447명(81.11부터 83.11까지 학생운동 관련 입대 조치된 자)에 대한 정홍교(녹화사업) 대상자로서 82년 9월부터 84년 11월까지 보안사에서 분류, 관리한 인원은 429명이며 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266명이나 밝혀고 있음.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유시민씨(80년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 의장)의 항소이유서에 주목할만한 기록이 있다. …제대를 불과 두 달 앞둔 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사업' 또는 '관제프락치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数百 특별대특수학적변동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대에 대한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한 암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사람들에게는 벌거숭이산을 푸른 나무로 채우려는 산림청의 사업정도쯤으로 이해될법한 녹화사업이란 용어는 여러 당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학생운동에 대한 정보입수와 탄압을 위한 수사기관의 순화 및 공작 사업을 충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특수학적변동자로 처리돼 강제징집된 학생들은 대부분 최전방에 배치돼 순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긴급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군 보안대는 반체제 반정부의식에 물든 이들 운동권학생들을 일단 좌경 몽공분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붉은 색깔에 가까운 의식을 푸르게 녹화시킨다는 것이 녹화사업의 기본 취지였다. 국군보안사령부는 82년경부터 녹화사업을 전담하는 특별심사과를 신설, 순화사업과 프락치 공작사업을 병행도록 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정규대학 출신의 중위급 단기장교를 선발, 특수학적변동자들이 복무하던 전방 일부 사단에 배치, 녹화사업을 담당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연세대 영, 독 불문계열 입학 후 8개월 학교생활후인 82년 11월 25일 교내시위 현장에서 20여명 학생들과 연행되어 그중 15명과 함께 강제징집당함.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녹화사업 실시 이전인 82년 7월 23일 보조 근무 중 M16소총으로 자살하였다고(국방부 제출자료 29)하나 같은 자료 앞쪽에는 녹화사업 실시 기간을 82.5~84.11로 명시하고 있음(국방부 제출자료 25). 국회 5공특위 당시 평민당 조승형 의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 24~29).

19)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회장으로 학생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다 83년 3월 성복경찰서에 연행된 뒤 병무청 직원 1명이 와서 간단히 서류를 작성하고 강제징집되었다가 녹화사업 도중 M16 소총에 의해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됨. 국방부 발표는 염세자살이었다고 하나 군 당국이 내어놓은 유서가 본인의 필적이 아님.

20) 1982년 2학년때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부 회장직을 맡아 활동 중이던 82년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식때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인문과학연구회 회장이라는 것이 밝혀져 11월 7일 새벽에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고령(60세가 넘음)인 데다가 3대 독자이고 시력이 나빠 보통의 경우에는 현역대에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국방부에서 유일하게 조사 중 사망한 것으로 발표한 경우나 이 마저도 죽음에 직접적인 연계성을 부인하고 제대 8일 전에 목매 자살하였다고 발표.

21) 한양대 공대 재학 중 교내 서클 활동, 야학 등 학생운동을 열심히 함. 83년

과 녹화사업의 공식적인 중단 이후 발생한 사건들²⁴⁾, 85년 발생한 민주위 관련 수배자 서울대생 우종원 사건²⁵⁾, 86년에 발생한 서울대생 김성수 사건²⁶⁾, 인천 연안가스 노동자 신호수 사건²⁷⁾, 89년 조선대 민주조선 편집장 이철규 사건²⁸⁾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의문의 죽음들이 있다.

이들 사건의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4월 야학 관련으로 경찰서에 갔다가 녹막으로 병증 판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집 됨. 그해 7월 녹화사업을 받던 중 M16 소총으로 연발 사격하여 자살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하였으나 연발사격의 경우 사업구가 발사에 의한 반동으로 인해 일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삼각형의 형태로 집중된 점으로 보아 조준 사격했음이 분명함.

22) 동국대 사범대에 다니면서 학생운동에 헌신해 오던 중 83년 3월 29일 시위 예비음모 혐의로 5명의 학생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1주일간의 조사를 받은 뒤 강제징집 당했다. 83년 8월 14일 군에서 자살했다고 통보하자 가족들이 자살할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강력히 항의하며, 영안실의 사체를 1주일간이나 지키면서 재수사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군수시대는 고침병과의 말다툼 끝에 피살되었다는 수정통보를 함. 녹화사업 과정에서 살해된 것을 밝히지는 못함.

23) 서울 공대에 다니며 학생운동을 하다 군에 입대한 뒤 녹화사업 과정에서, 입대 전 학생시절의 민주화운동과 이학연합회 사건 관련 혐의로 전기고문을 두 번 씩이나 당하면서 5일 동안 취조를 받다 기숨에 3발의 총탄을 맞고 죽어있는 채로 발견됨. 국회 5공 특위 당시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녹화사업 실시 2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였음.

24) 서울대생으로 카투사로 복무 중 87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용권 사건, 서울 대생으로 군 복무 중 87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우혁 사건 등 다수가 있음.

25) 서울대 사회과학대에 다니면서 학생운동으로 복역 이후 민주위 사건 관련으로 수배를 받던 중인 1985년 10월 11일 경부선 하행 열차를 타고 가다 충북 영동 - 황간 역 사이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소지품 속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적은 쪽지가 있었는데 이 글씨는 평소의 필적과 전혀 상이하여 가해자가 신원을 알리려고 적어 놓은 것으로 추정 됨. 더욱이 사건에는 가슴에 나타난 명 자국 등 인공 흉터를 시킨 혼적이 역력히 나타나 있음.

26) 서울대 사회과학대 입학하여 총학생회 연극부에서 활동하다 1986년 6월 18일 서울대생을 찾는 정체 불명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6월 21일 부산송도 앞 바다 속에서 시멘트덩이를 3개나 매단 채 죽어있는 것을 접수부가 발견함. 행방 불명 당시 시험기간이었고, 물 속에 있었음에도 피가 응고되어 있었으며 두피 아래 피하출혈이 있었음. 발견 장소와 상태로 보아 배에서 던져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었음.

27) 1986년 6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도화가스에서 가스통 벌브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서울시경 대공수사과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3명의 남자에 의해 연행된 뒤, 19일 전남 여천군 대미산 중턱의 한 동굴에서 목 앤 시체로 발견 됨.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고 가매장. 이후 시신의 상태를 보니 두개골이 갈라진 상태였음. 국회 5공 특위 당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치안본부에서 신호수 사건을 '장홍공작'이라 이름을 붙이고 수사하였음.

28) 조선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교지 '민주조선'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던 중 1989년 5월 3일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5월 10일 광주 청옥동 수원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는 수갑을 찬 혼적과 망이 많이 들어 있는 등 고문의 혼적이 역력함.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익사로 물고 감.

권력이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는 이들 사건 하나 하나가 갖는 의미가 정권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폭로하여 정권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3. 조직적인 범행 뒤 살해 은폐된 의문사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87년 군대에서 학생 시위 응호 발언을 하다가 살해 된 이이동 사건²⁹⁾, 88년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안기부 직원에게 유인되어 거문도 앞바다에서 살해 된 이내창 사건³⁰⁾, 속초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으로 재단 측의 끈임 없는 협박을 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용갑 사건³¹⁾,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으로 안기부의 집요한 전노협 탈퇴 공작 중에 살해된 박창수 사건³²⁾, 인천 아암도 앞 바다에서 노점을 하다 철거반원 등에 의해 살해된 이덕인 사건³³⁾ 등이 있다.

이들 사건들의 경우는 테러를 목적으로 폭행을 하다 살해되자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시킨 경우와, 집요한 공작 중에 회유되지 않자 이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9) 전남대에서 학생운동에 헌신하다 군에 입대. 부대에서 충정교육 도중 학생 시위 응호 발언을 하자 중대장이 주역과 발길질로 구타하여 실신시키고 이어서 총성이 들림. 군의 발표는 자살하였다고 하나 살해당했다는 증언이 있음. 부친은 그 후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다 반향이 없자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에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능악을 마셔 음독 자살함.

30) 1989년 중앙대학교 안성교정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하던 중 1989년 8월 15일 거문도 앞 바다에서 의상에 의한 피하출혈 혼적이 7군데나 있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나중에 안기부 인천분실(세정 인하공사) 소속 어직원으로 밝혀진 도연주와 그 남자친구 백승희 등 2인과 동행하여 편도로도 밤새워야 갈 수 있는 거리인 거문도까지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일은 다른 의문사의 경우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31) 1990년 동우전문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학교재단 측이 고용한 지역의 조직 폭력배들에게 총학생회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요받으며 수 차례에 걸쳐 납치, 강금, 폭행 협박을 당하다가, 3월 28일 탈상 당한 뒤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을 당함.

32)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노동운동 중 1991년 대우조선 피업 관련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 참여했다가 3자 개입 위반으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방병원에 후송된 지 2일 만에 투신 자살로 위장한 변사체로 발견됨. 경찰은 시신을 강제로 털취하여 부검하고 사건을 종결지음.

33) 4급 장애인으로 인천 송도 앞 바다 아암도에서 노점을 하던 중 인천시 당국의 대책 없는 노점 단속에 항의하여 철탑 망루에서 투쟁하다, 1995년 11월 25일 망루에서 내려 왔으나 실종되었다가 28일 아암도 앞 바다에서 손에 포박이 묶인 채 시체로 발견됨.

살해하고 이를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시킨 경우가 있다.

IV.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도와 좌절

1. 정당, 국회, 사법부에서 다루어 진 경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정당, 국회, 사법부 등에서 수 차례의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기관 외에는 다른 어떠한 해결 주체가 서 있지 못한 조건에서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이를 저지하는 세력에 의해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이들 기관이 국가의 중요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또 다른 주체를 세워야만 하게 되었다.

가. 국회 법사위의 <백범 김구 선생 사해 진상규명 소위>

백범 테러 살해범인 안두희³⁴⁾가 평소에 백범 김구 선생을 흡모하던 버스운전사 박기서 씨의 테러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96년 10월 23일 발생했다. 그 동안 백범 살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번번이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정부 차원의 노력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민간 차원에서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었다. 민족정기구현협의회장 권중희씨의 집요한 노력에 의해 91년 11월과 92년 4월 CIA 전신인 미육군전략처(OSS)의 한국 책임자 미군 중령이 안두희에게 백범을 "제거해야 할 '블랙 타이거'"라 부르며 넌지시 암살의 필요성을 훌렸다는 자백을 받아냈고³⁵⁾ 이에 따라 관련 단체에서 미 대사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³⁶⁾ 대사관

34) 당시 포병 소위였던 안두희가 49년 6월 26일 백범 선생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해 8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석 달 후 15년으로 감형되었고 육중에서 2개금 특진되어 대위가 되었다. 그후 50년 6월 27일에 임명장 행정지로 석방됐다.

35) 중앙일보 92.4.13자 참조

앞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³⁷⁾. 그리고 안두희가 당시 폼사령관 장은산 등으로부터 직접 백범 암살 지령을 받았고³⁸⁾ 이후 암살 실행 6일 전에 경무대에서 이승만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백범에 대한 암살을 의미하는 말을 들었다³⁹⁾는 자백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94년 1월 4일 국회 법사위에 <백범 김구 선생 시해 진상규명 소위>⁴⁰⁾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사항을 알아내지 못하고 95년 12월 18일 '백범 암살 사건은 안두희에 의한 단독 범행이 아니라 멀리 모의되고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된 정권적 차원의 범죄'라는 요지의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활동을 마감하였다.

나. 민주당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조사위원회>

백범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를 밝히는 과정에서 권중희씨의 길고도 집요한 노력이 주축이었다면, 장준하 선생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돋보였다. 서울방송에서는 93년 3월 14일과 28일에 걸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통해 장준하 선생의 사인에 대해 심도 있는 취재를 하여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었다. 이에 대한 반향은 커다란 한겨레신문은 다음날 계훈재 선생의 인터뷰를 통해 정

36) 중앙일보 92.09.28.자, 92.04.14.자, 92.04.20.자 참조
37) 중앙일보 92.05.22.자, 92.04.14.자, 92.04.20.자 참조
38) 중앙일보 92.06.26.자 참조
39) 중앙일보 92.09.24.자 참조
40) 위원장 강신욱을 포함한 민자당 의원 3인과 민주당 의원 2인 등 5인으로 구성

치적 타살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장씨의 죽음은 유신독재와 민주세력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장씨와 나, 윤보선, 홍남준, 백기완씨 등이 그해 8월 22일께 모여 긴급 조치 9호에 반대하고 반전평화대회를 선언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적 타살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계씨는 "비록 타살 용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현재도 권력 주변에 있는 관련자들을 철저히 밝혀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다시는 이러한 야만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길이다"⁴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였다. 한겨레신문은 "장준하 죽임"과 민족의 공소시효"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의 죽음, 아니 죽임 당함이 18년에 가까운 지금,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가 대중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깊은 무엇일까? 지금도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살인의 손들'을 가려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 식민시대 중국에서 김구 선생을 모시고 해방운동을 한 장준하씨는 일본 육군장교로서 '천황 폐하에게 충성하던' 박정희씨가 독립된 나라의 합법적 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빼앗은 일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군사독재와 씨우다가 결국은 목숨을 잊기고 말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장준하씨가 죽임을 당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자 검찰은 "그가 살해됐다 하더라도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났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죽임'은 법률을 떠나 민족의 공소시효라는 차원에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그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작업은 국회와 언론과 국민이 함께 할 일이다."⁴²⁾

이렇게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자, 당시 민주당에서는 성명을 내고 정치적 타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미명 아래 실체적 진실 파악의 책임을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왜곡된 현대정치사를 바로잡고 과거 군사독재권력의 만행을 밝혀내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재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하였다⁴³⁾. 이후 민주당은 3월 29일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한광옥, 위원 이부영, 조철구 등 9인)⁴⁴⁾을 설치하고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였다. 4월 2일에는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된 현장인 경기도 포천 약사봉을 답사하였고⁴⁵⁾, 4월 5일에는 장준하 선생 사인 10가지 의혹을 발표하고 타살이라는 심증을 굳혔다는 발표를 하였다⁴⁶⁾. 이어서 5월 1일에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⁴⁷⁾. 그러나 민주당 조사위가 이와 같이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게 된 이유는 사건 목격자인 김용환씨 증언의 신빙성과 당시 사건 관련 검찰, 군 검찰관 검시의 등 진상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금은 말할 수 없다"⁴⁸⁾고 하여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 법원<이내창씨 의문사사건 보도와 관련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⁴⁹⁾>

중앙대 안성교정 이내창 총학생회장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과정에도 언론의 역할이 커졌다. 사건 이후 40여 일에 걸쳐 중앙대 '공동대책위'는 4차례에 걸쳐 연인원 200여명의 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진상규명 노력을 하였다. 그러던 88년 10월 6일, 장례식이 있던 날 한겨레신문에는 "이내창씨 최후 동행자 안기부 직원" 제하의 글에서 안기부 직원 도연주와 그의 애인이라 주장되는 백승희씨가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88년 10월 국회 국정 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뤄지고 야

43) 한겨레신문 93.03.16.자 참조

44) 한겨레신문 93.03.29.자 참조

45) 한겨레신문 93.04.02.자 참조

46) 한겨레신문 93.04.05.자 참조

47) 한겨레신문 93.05.01.자 참조

48) 위 93.04.05.자 기사 참조

49) 의문사와 관련한 재판의 경우 이내창 사건 외에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집단 폭행을 당한 뒤 행려병자로 위장되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한 김상원 사건이 재판을 통해 경찰의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고, 87년 6월 항쟁 당시 오버브릿지 아래에서 최루탄을 뒤집어 쓴 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태춘씨 사건의 재판에서 국가의 일부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으며,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 사건도 재판을 하였으나 이내창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력한 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불참 등으로 1심에서 패소하자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어 항소를 포기하였다.

당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였으나 진상규명에 접근하지 못하였다⁵⁰⁾. 이후 이 사건은 안기부 직원 도연주가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를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4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어 법정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인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루기보다 명예훼손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장임원 교수 등 변호인 측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백승희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포기하고, 백씨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조용환, 이석태, 김형태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된 문제의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모두 침해한 위헌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이번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백씨의 진술처럼 수사기관에서 만든 수사서류 가운데 증거로 제출되는 것은 결국 피고인 쪽에 불리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진술자의 법정증언을 거쳐 성립의 진정성을 입증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재판 받을 권리로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헌법소원을 냈다⁵¹⁾. 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에서 당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재판부는 "문제의 기사는 당시 입수경양 방북사건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전대협 간부인 이씨의 변사의혹을 다룬 것인 이상, 이 기사를 보도한 주요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기부요원 도연주씨가 이씨 사망 직전 동행했다는 보도내용은 도씨의 알리바이가 성립돼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⁵²⁾. 진상규명에는 오히려 접근하지 못하고 말아,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재판은 94년 11월 9일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

50)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살아서 만나리라', 283-296쪽

51) 한겨레신문 93.08.04.자 참조

52) 한겨레신문 93.11.17.자 참조

각되었고, 96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재판 당시 한겨레신문 이 공순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진실과 현실의 벽에서의 언론인으로써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여 동안 진상규명 면에서 한 걸음도 진전된 것이 없다. … 그런 점에서 이미 죽은 지 4년이나 돼 가는 이내창씨에게 죄송스러운 감미져 든다. … 보도 뒤에 추가로 현장 취재를 했는데 주요 증인 가운데 한사람인 덕성호 선장 이현우씨가 ‘안기부에서 온 사람이나?’면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또 소재조차 불분명해 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주요 증인인 디방 어종업원 최희씨가 취재 때 만나 ‘죽은 이내창씨가 꿈속에 보인다. 더 이상 괴롭히 말아달라고 말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결정적인 증인들이 ‘기억에 없다’고 잡아떼거나, 아예 법정에 나오지조차 않아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 그들이 검찰·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 아직도 깊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이내창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담당검사에게 수사결과를 놓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되물은 일이 있는데, 그 때 검사는 “사건 진상규명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명예훼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할 뿐이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보도한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가리지 않은 채 어떻게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 점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다. 증인들이 얼마든지 진술을 번복할 수 있고, 물증이 없으면 또다시 법정에서야 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기사를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과 언론의 사명을 외면한 진짜 ‘유죄’가 될 것이다. 신문기자로서 기사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 4년간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다시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양심의 부름에 따라 역시 진실 그대로 보도할 것이다. 그 동안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 한다.”⁵³⁾

라. <국회 이철규군 변사사건 국정조사위원회>

89년 5월 10일 광주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공안합수부의 수배를 받던 민주조선 편집장 이철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광주·전

남지역의 민족민주운동 단체들은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살해로 규정하고 즉각 ‘애국학생 고 이철규열사 고문 살인규명 대책위준비위’⁵⁴⁾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 참혹한 시신의 상태와 실종까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국민들은 노태우 정권이 고문 살해한 뒤 이를 은폐시킨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여기에다 5월 12일에는 미국무부까지 ‘이번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으나 개탄스러운 사건이며 잔학스러운 행위다. 노태우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점을 유의하며 살인범을 밝혀 엄벌에 처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⁵⁵⁾하기도하였다. 이처럼 진상규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광주 뿐 아니라 전국, 세계로 확산되어 가자 6공화국 최초로 5월 23일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어, 5월 29일부터 활동하게 되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위원장 정동성을 비롯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 5인, 평화민주당 3인, 통일민주당 2인, 신민주공화당 2인 등 모두 12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조사 활동 이후 1년여가 지난 1990년 7월 13일, 야당을 배제한 채 3당 야합으로 탄생한 민자당 단독으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 까지 존속하였으나⁵⁶⁾, 실제 활동 기간은 89년 6월 27일 까지 30일에 불과하였다. 위원회는 3회에 걸쳐 광주 현지 조사와 15차례의 전체 회의, 3차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87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17명의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였다. 국정조사위원회의 활동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원회의 목적으로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철규변사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진

54)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이철규열사 사인 진상규명 자료집’, 639-677쪽 참조. 시신 발견 다음날인 1989년 5월 11일 준비위 명의로 ‘대책위 속보’가 발행되었다.

준비위는 5월 15일부터 대책위로 전환되었고, 5월 19일에는 국민위로, 7월 1일부터는 ‘애국학생 고 이철규열사 고문살인 진상규명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로 전환하여 진상규명 투쟁을 정권 퇴진 투쟁과 연결시켜 나갔다. 그리고 11월 4일 장례를 앞둔 3일에는 ‘애국학생 고 이철규열사 민주국민장 장례위원회’로 전환하고 진상규명 투쟁을 마무리하였다.

55) 주요신문 1989.5.14.자 참조.

외무부에서는 미국무부에 정정 요구를 하였으나 미국은 거부하였고 당시 강영훈 총리는 이에 대해 유감표현을 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한 미간의 공안조직간의 관계 상, CIA에서 공안당국의 고문 살해 후 위장한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고 이를 국무부에 보고, 이 같은 성명이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다.

56) 위원회의 구성은 3당 야합이 이루어진 90년 2월 16일 이후에는 민자당 9인, 평민당 3인 이었음.

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케 할 목적’이라 밝힌 것처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권력에게 형식적으로라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고, 조사 활동도 이에 준하여 운신의 폭이 결정되어졌다. 위원회는 검찰의 조사 발표에 제기되는 의문점의 조사, 검찰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 청취, 현장 검증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검찰은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⁵⁷⁾ 여야가 합의한 재 부검⁵⁸⁾ 조차 노골적으로 방해하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⁵⁹⁾.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그 활동을 마감하였다.

(1) 이철규군의 사인은 검찰의 발표와 같이 실족에 의한 의사라는 사실에는 조사위에서 의견을 같이 하나 다만, 실족현장에 관하여는 조사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검찰이 제시한 실족지점은 사실인정의 불합리성

57) 한국일보, 전남일보 등, 89.06.01자 참조.

위원회가 광주 지검에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광주 지검은 참고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

58) 앞의 책, 257-280쪽. 당시의 부검에 대해 6월 13일 인의협은 ‘이철규씨 의문사 사건에 관한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철규씨의 죽음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함에 있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인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인의 규명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검토되어야만 제대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둘째, 법의학적 검사의 전 과정은 과학적 수칙들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그리고 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의학적 소견들은 정황적 증거와 함께 정확한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하며, 어떤 예단이나 편견이 개입되어 증거물이 의도적으로 퀴어선택됨으로써 왜곡된 판단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인의협은 특히 둘째 과학적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재 부검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부검의가 장기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메스와 가위 및 장갑 등을 세 것으로 교체하지 않은 것은 법의학상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장기 조직에서 풀링크로트이 발견되어 의사로 단정케 한 결정적 소견과 연결된 것으로 과정상의 잘못을 넘어서는 문제라 지적하였다.

59) 앞의 책, 243-244쪽 참조. 국민위는 부검 과정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국제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법의학자 로버트 캐쉬너 박사를 초청해서 재 부검을 의뢰하였으나 검찰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원강히 거부하였다. 첫째,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 목적이 의학적, 학문적 자문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인 규명을 위한 해부에는 참관할 수 없다. 둘째, 외국인은 우리 나라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주권침해 행위를 할 수 없다. 셋째, 학문연구의 필요 이외에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인규명을 위해서는 해부할 수 없다. 넷째, 해부에 직접 가담하여 집도를 하지 아니하고 참관하는 것 그 자체로 탈법 행위이다. 다섯째, 해부는 장기 등 일부분을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검찰은 이후 여야의 요구에도 이를 묵살하였다.

과 과학적 검증방법의 미흡 경험측상 상황논리에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다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 고문살인에 의한 타살이라는 주장은 검찰에서 발표한 이철규군의 사인진상이 의사라는 부검결과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조작 및 조작 수사의 의혹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보면, 특히 조작수사의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검찰경찰들의 진술이 자주 번복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듯 하나 이는 사건발생 후 10일 지난 후에 순간적으로 발생하였던 사실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이상한 것이고 오히려 기억에 따른 진술 때문에 진술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보여지는바 조작수사에 대한 의혹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국회 제5공공화국 권리행비리 특별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기족협의회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988년 10월부터 135일 동안 NCC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하였다.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당시 여소 야대의 정국에서 열린 국회 5공청문회에서 의문사 문제가 다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을 뒤로 한 채 5공 특위는 진상규명에 접근하지 못하고 3당 합당으로 그 활동을 중단하고 말았다.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던 사람들이 특위 활동으로 얻은 것은 그 동안 관계당국에 끈임 없이 요구해도 구할 길이 없던 강제징집자 명단과 당국에서 주장한 근거, 그리고 녹화사업을 실시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과, 개별 사건들에 대한 당시의 사진들을 비롯한 조사 자료뿐이었다.

2. 청원을 통한 시도와 좌절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문사 진상규명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그리고 재판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려 하였던 사례들이 있다.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이처럼 공적으로 진상규명에 접근하면 그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결과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 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53) 한겨레신문 90.08.05.자 참조

집중된 이러한 경우들이 실패했는데 유가족 개별 차원에서 노력한 것이 어떠하였는지는 자명한 일이다. 여기 개별 청원의 사례를 허원근⁶⁰⁾의 아버지 허영춘씨(현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회장)의 그 동안의 시도와 좌절을 통해 살펴보자 한다.

허원근은 광주 대동고등학교에 다닐 때 광주항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양심적인 청년 학생이었다. 부산 수산대를 다니다 군에 입대하여 첫 휴가를 하루 앞둔 날 머리와 양쪽 가슴에 M16 소총으로 세 발을 맞은 채 죽음을 당하였다. 군에서는 자살로 발표하였으나 시신의 상태를 본 어느 누구도 자살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타살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우선 두개골이 상당부분 파손되어 뇌가 튀어 나와 있었고 양쪽 가슴을 관통한 총상을 각각 입어 스스로 자살하였다며 죽지 않고 세 발을 다 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허영춘씨는 아들의 시신을 보자 타살되었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로써 밝혀진 사실은, 사건 당시 총성이 두 번 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도 두 개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실시한 화약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조작했다는 것과, 사건 이후 부대원들에게 두 달씩이나 정훈교육을 실시하여 발설하지 말 것, 만일 발설하게 되면 죄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고 협박을 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만기 제대를 앞둔 사병들의 제대가 늦어지기까지 했다는 등이다. 허영춘씨는 이러한 사실들을 적은 탄원서를 사건 직후인 1984년 대통령과 국회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부산수산대 총장, 국방부, 관할 군부대 현병대 등에 보내고 진상 조사 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신은 부산수산대 총장의 위로의 편지 외에는 관할 기관에 이첩하였다는 것과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내용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신문고에 장문의 글을 써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였으나 서류 반송과 함께 그런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 96년에는 의문사지회의 여러 사건들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재 수사를 요청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자살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기관에서 재수

사하라'고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관할 기관인 국방부 등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98년에도 국방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접수시켰으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V. 국제법에서의 의문사 문제

1. 의문사를 자행한 자는 국제법에서의 인도에 반한 죄(비인도적 범죄)에 해당

의문사에 관하여 국제법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부분은 이 같은 범죄가 전 인류에게 어떠한 범죄인가 하는 점이며, 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구제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이뤄내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전쟁범죄, 학살, 고문 등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지구 차원의 처벌 노력은 2차대전 이후 나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범 처리를 위한 '도쿄 재판'이 처음이었다. 그런 뒤 1968년 11월 26일 유엔 총회에서 '전쟁 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적용)제한의 비 적용에 관한 다자간 협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으로써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제한이 없음을 확정하고 그 국제적 적용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의 적절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보스니아 전범처벌을 위해 헤이그에 유엔 형사재판소를 세웠고, 르완다 내전에서의 대량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해 탄자니아에 유엔형사재판소를 세운 사례가 있다. 그리고 98년 7월 로마에서 한국을 포함한 120개국이 서명하여 2000년 개설하기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상설적으로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에 대해 처벌하기로 되어 있다.

2. 처벌 사례

가. 도쿄 재판(극동 군사재판)

도쿄 재판은 유럽에서 열린 '뉘른베르크 나치전범재판'과 더불어 다시는 세계에서 군국주의의 부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인류의 준엄한 이성의 심판이었다.⁶¹⁾

도쿄 재판에서 다른 범죄는 (1) 평화에 대한 죄(침략 전쟁의 계획·준비·개시·실행 또는 그 중의 것에 대해 공동 모의한자) (2) 전쟁범규 또는 관계를 위반한 죄 (3) 인도(人道)에 반한 죄(전쟁 전 또는 전시중의 살육, 섬멸, 노예적 잔학상, 추방 그 밖의 비인도적인 행위)의 세 가지였다.

도쿄 재판에서 국제검사단의 수석검사로 임명된 조셉 B. 키년 검사는 1945년 11월 6일 그 활동에 들어가며 "장래에도 다시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이다."라고 밝혔다.⁶²⁾

그리고 46년 6월 24일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문명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했다. 민주주의와 그 본질적 기초, 즉 인격의 자유와 존중을 파괴하기로 결의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히틀러의 일파와 손을 잡았다. …살육은 정의 또는 법률과는 상호 용인되지 않는다. 백만 명의 생명 파괴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나, 단 한 사람의 살해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나 불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나이가 국가의 법률 및 제도의 지지를 받고 한 살육이라고 해서 그 범죄 자체가 결코 형벌의 면제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지워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세계를 파괴로 이끄는 폭력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면, 이 실패는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기소장이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하라면, 제1의 범죄는 공동모의이다. 제2의 범죄는 기소장에 있는 불법행위인데, 그 본질적 요소는 침략적 전쟁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소장에서 피고들은 공범자의 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죄가 있다고 논고하고 있다.

도쿄 재판 3년여의 재판 기간 끝에 48년 11월 12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내려 침략전쟁의 원흉 도조 히데키 등 7명의 A급 전범자에게는 교수형, 18명에게 종신 또는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철퇴를 가하였다.

61) 김삼웅, '도쿄 전범재판', 무크/친일문제연구회, 기념기획(1995), 110쪽

62) 김삼웅, 앞의 글(주 61), 114쪽

나. 프랑스 나치 협력자 대숙청

의문사 문제에 국한 된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의 나치 협력자들에 대한 숙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나치 전범뿐 아니라 자국 내 협력자들에게 공소 시효가 없는 인도에 반한 죄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국내법에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처단하고 있다.⁶³⁾

최근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리옹 지역 민병대장 폴 투비에가 1994년에 시효가 없는 인도에 반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파리의 고등법원은 98년 2월 27일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로저 가로디에게 반인도주의죄로 12만 프랑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95년 12월 발간된 그의 저서 <이스라엘 정치의 기초신학>라는 책이 유대인에 대한 대학살 현장인 가스실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지금까지 나치 협력자나 당시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드골이 나치 점령 하에서 비시 정권을 부인하고 임시 정부를 세워 나치 협력자 처단과 저항운동의 정당성을 선언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드골은 이어서 각각의 훈령을 발표하여 전국에 나치협력자 처리 전담재판소 설치⁶⁴⁾, 시민법정과 비국민제도⁶⁵⁾ 창설⁶⁶⁾, 비시 정권의 국가원수 격인 폐탱 원수를 포함한 3부 요인을 특별 심판하는 최고재판소를 설치⁶⁷⁾하였다.

63) 한겨레신문 98.03.06자 참조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2차대전 중 독일 점령 폴란드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500명을 직접 살육한 게슈타포가 55년만에 독일 검찰에 체포됐다.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여성을 보내고 있는 알폰스 괴츠프리트(78세) 노인이 주인공이다.

한겨레신문 98.05.30자 참조, 이와 함께 독일 의회는 98년 5월 28일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이 폐배한 지 반세기만에 나치 치하에서 내려진 50만 건의 유죄판결을 파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과 제1야당인 사민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안은 나치 집권기간인 33~45년 사이에 정치와 종교, 인종 및 군 문제 등으로 이뤄진 모든 유죄판결을 무효화하고 있다.

64) 주석일,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1944년 6월 26일 드골의 훈령', 무크/친일문제연구회, 기념기획(1995) 145쪽

65) 주석일, 앞의 글, 145쪽. 나치 협력자 9만5천명이 비국민 판정을 받음. 비국민이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정부와 국영기업 등 공적 진출자격 박탈, 군에서 계급 박탈, 민간기업, 은행, 신문과 방송 등의 간부직에서 제외, 노동조합, 직업연맹, 시범부부의 연관직업(변호사 등), 교육기관, 언론관련 공공기관 진출금지, 무기 소유와 휴대 금지.

66) 주석일, 앞의 글, 1994년 8월 26일 드골의 훈령, 145쪽

67) 주석일, 앞의 글, 145쪽